



제1장 ALES 개요 1

- I. 개최 배경 및 목적 3
- II. 행사 개요 3
- III. 프로그램 세부 운영 순서 6
- IV. 행사 주요내용 8

제2장 ALES 주요내용 11

- I. 개회식 13
- II. 기조연설 16
- III. 제1세션 20
 - 1. 개 요 20
 - 2.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21
 - 가. 주제발표 21
 - 나. 토론 25
 - 3. 현장 사진 27
 - 4. 주제발표문 및 토론문 28
 - 주제발표 1 28
 - 주제발표 2 37
 - 토론 1 49
 - 토론 2 52
 - 토론 3 55
 - 토론 4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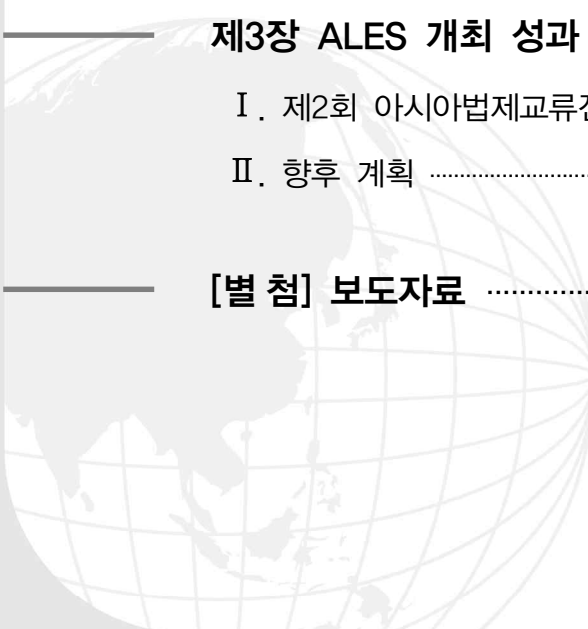


IV. 제2세션	67
1. 개 요	67
2.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68
가. 주제 발표	68
나. 토론	73
3. 현장 사진	76
4. 주제발표문 및 토론문	77
○ 주제발표 1	77
○ 주제발표 2	84
○ 토론 1	93
○ 토론 2	94
○ 토론 3	98
○ 토론 4	101

제3장 ALES 개최 성과 및 향후 계획 105

I. 제2회 아시아법제교류전문가회의의 성과	107
II. 향후 계획	108

[별 첨] 보도자료 111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서

제 1 장

ALES 개요

2014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I 개최 배경 및 목적

○ 개최 배경

-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뒷받침한 한국 법제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지속적인 관심 증대
- 제1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법제 교류의 장 마련

○ 개최 목적

- 일반적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협력 분야 구체화
- 법제관련 기관 간의 실질적 협업을 통한 법제 한류 확산

II 행사 개요

■ 행사명

- 국 문 :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
- 영 문 :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ALES)

■ 일시/장소 : 2014. 10. 29.(수),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

■ 공동 주최 :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 주 제 :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 주요 의제

- ①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
- ②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 **참가인원** : 법제교류 관련 전문가·연구자·실무자 및 참관인 등 170 여명

○ **국내 참가자** :

국회, 중앙행정기관, 경제단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국내 주요 로펌, 외국 법제 기관 업무 담당자, 주한 아시아국가 대사관 관계자, 아시아법연구소, 국민법제관 등 150 여명

* 주요인사 : 권오승 서울대 교수,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등

○ **외국 참가자** : 8개국 총 16명

대사급 참가자(4명)	Suth Dina 주한 캄보디아 대사, Elda Maria Santos 주한 동티모르 대리대사, Bakhtiyor Ibragimov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리대사, Asset Issenali 주한 카자흐스탄 부대사
주한 외국대사관 및 관계인(8명)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외국 연사(4명)	Davron Ahmatov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국장, Miras Daulenov 카자흐인문법률대학 국제법학장, Elyor B. Rakhmanov 우즈베크ICT위원회 국장, Zhanna Abdilmanova 카자흐 법무부 전문관

■ 구성

- 개회식과 기조연설 및 세션별 주제발표·토론(2개 세션)으로 운영

구분	주요 내용
개회식	개회사(법제처장), 환영사(한국법제연구원장), 축사(주한 카자흐스탄 부대사,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리대사)
기조연설	• “유라시아 시대와 대한민국 법제의 소통” (김경섭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 “유라시아 국가 법제개관 및 관심 협력분야”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제1세션	•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
	① 한국 전자정부제도의 법적 체계 ②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관련 법률 발전 현황
제2세션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②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

III 프로그램 세부 운영 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개회식	14:00~14:20 20'	○ 법제처장 개회사 ○ 공동 주최 기관장(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 주한 카자흐스탄 부대사 축사 ○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리대사 축사
기조연설	14:20~14:35 15'	기조연설 1. 유라시아 시대와 대한민국 법제의 소통 연사 : 김경섭 부원장(한국정보화진흥원)
	14:35~14:50 15'	기조연설 2. 유라시아 법제개관 및 관심분야 소개 연사 : 이성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안세, 前 국민대 교수)
	14:50~15:00 10'	휴 식
제1세션	15:00~16:20 80'	•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 사회자 : 손희두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발 제 : 1. 한국전자정부제도의 법적 체계 (안전행정부, 김민형 서기관) 2.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관련 법률 발전 현황 (우즈베크 입법조사연구소, Davron Ahmatov) 지정토론 - 권헌영 교수(광운대학교) - 김수익 법제관(법제처) - 김대옥 부장(LG CNS 해외사업개발팀) - Elyor B. Rakhmanov(우즈베크 ICT 위원회)
	16:20~16:30 10'	휴 식

구 분	시 간	내 용
제2세션	16:30~17:50	80' •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사회자 : 이강섭 국장(법제처) 발 제 : 1.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연세대학교, 오병철 교수) 2.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법 (카자흐 인문법률대학, Miras Daulenov 국제법학장) 지정토론 - 손 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박세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 이금우 차장(SK C&C) - Zhanna Abdilmanova 전문관(카자흐스탄 법무부)
만찬	18:00~	

IV 행사 주요내용

1. 개회식

■ (개회사) 제정부 법제처장

“성장과 도약을 위한 법제경험을 보유한 대한민국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서로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법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협력의 손을 더욱 굳게 맞잡을 수 있을 것이라 믿음”

■ (기조연설1) 김경섭 정보화진흥원 부원장

- 주제 : 유라시아 시대와 대한민국 법제의 소통

“앞으로 유럽이나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확산은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ICT 법제 분야의 유라시아 국가 간 협력 강화는 각국의 현재적 필요는 물론, 보다 큰 전망을 토대로 그 추진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 (기조연설2)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 주제 : 유라시아 국가 법제개관 및 관심 협력분야

“오랜 기간 서로 교류·협력해왔던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이 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한 법제분야에 있어 서로 교류 협력을 하는 것은 모두에게 매우 바람직함. 특히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법제분야는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고 다른 관계 법령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교류협력관계에 있는 당사자 국가들의 IT법제 전문가 모두의 참여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제2회 아시아법제교류전문가회의가 가지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됨”

2. 세션별 주제 발표 및 토론

슬로건: “대한민국 법제경험 아시아와 나눕니다.”
“Asia shares legislative experience”

-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등 총 2개 세션으로 진행

■ 제1세션 ■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

- ① 한국 전자정부제도의 법적 체계
- ②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관련 법률 발전 현황

■ 제2세션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 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 ②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

- 민·관·학계 총 12명의 국내·외 연사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

- 한국법제연구원 등 법제연구기관과 안전행정부(전자정부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 등 행정기관, 행정시스템 구축 기업 등 관련 분야별 민·관 공동 참여
- 특히, 현지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고위 공무원들이 발제자·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자국의 IT 법제 현황 및 쟁점 등을 직접 소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서

제 2 장

ALES 주요내용

2014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I 개회식

1. 개회식 개요

- 일 시 : 2014. 10. 29. 14:00~14:20
- 장 소 : 본회의장(에메랄드홀)
- 사회자 : 조지은 사무관
- 언 어 : 한국어(통역부스 한-러-영)

2. 개회식 주요 내용

■ 개회사 : 제정부 법제처장

- ▶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뒷받침한 법제적 발전 경험을 아시아 국가와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 ▶ 오늘 제2회 아시아법제교류전문가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하루가 다르게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국가 간 법제협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려 함.
- ▶ 법제도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법제’라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 위에 이루어질 수 있었음.
- ▶ 성장과 도약을 위한 법제경험을 보유한 대한민국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서로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유라시아 국가들은 ‘법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협력의 손을 더욱 굳게 맞잡을 수 있을 것이라 믿음.

■ 환영사 :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 ▶ 지금 한국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대한 관심이 널리 확산되고 있고,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음.
-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IT 산업과 IT 법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 전문가회의를 통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간에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발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함.
- ▶ 2013년에 이은 이번 전문가회의(ALES)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법제 전문가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의 기반이 완성되고,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발한 법제 정보의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져서 각국의 법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함.

■ 축사 : 아셋 이세날리 카자흐스탄 부대사

- ▶ 여러 국가 전문가들이 실제적인 경험과 지식을 교류할 수 있도록 이 훌륭한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본 행사 주최 측에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 ▶ 전자 상거래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 업체와 협력하는 국제무대에서도 무역 경제 협력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으나 현행 법적기반 및 입법개발 체계는 인터넷 서비스의 빠른 확산 속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매우 뒤처져 있음.
- ▶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방면으로 강화시켜 가고 있음. 긴밀하고 다각적인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여러 분야들과 더불어 전자 상거래 분야에도 양국이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축사 : 바흐티요르 이브라기모프 우즈베키스탄 대리대사

- ▶ 오늘 심포지엄에 초대해 주신 대한민국 법제처에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함.
- ▶ 법제처는 제정부 법제처장님의 지휘 아래 한 해 동안 다른 국가와의 협력 수준을 크게 높였으며, 효율적인 법적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한국 법제처가 경험한 바를 전 분야에 걸쳐 공유해 왔음.
- ▶ 작년에 제1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는 수준 높고 잘 조직되어 있었으며, 이 회의를 통해 법제처가 가진 큰 잠재력을 볼 수 있었음.
- ▶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확고한 법적 기반으로 민주 국가를 건설한 한국의 경험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본 행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법적 기반 구축에 관한 우즈베키스탄의 경험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는 한편, 이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동료 여러분의 경험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바람.

II 기조연설

1. 개 요

○ 주제 및 기조연설자

기조연설1	유라시아 시대와 대한민국 법제의 소통 (김경섭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기조연설2	유라시아 국가 법제개관 및 관심 협력분야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 시간 : 14:20~14:50 (30')

○ 장소 : 본회의장 (에메랄드홀)

2. 기조연설1 (요약)

I. 머리말

- 그 동안 세계 각국은 ICT가 단지 경제와 문화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감했고, 이러한 ICT의 힘은 세계 각국의 법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음.

II. 전자정부 분야에서의 법제 소통과 협력

1. ICT를 통한 정부서비스의 혁신

- 초기 전자정부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효율성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점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외적인 민주성, 정부의 투명성과 행정 활동의 혁신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수준까지 도달함.

2. 우리나라 전자정부법제의 현황과 전망

- 우리나라는 정부 패러다임의 변화와 ICT 신기술의 도입과 보급에 발맞춰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해 왔음. 2013년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라는 정부3.0의 구현과 함께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등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음

3. 전자정부법제의 발전 및 국제교류

- 지금까지의 정보화 입법이 국가단위에서 전반의 정보화 발전을 이루어온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고도화된 정보화 성과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균형을 평가하고 지역별, 국가상호간 그리고 각 분야별 정보화 추진 과제 등을 발굴하여 유라시아를 비롯한 지역적 단위의 전반적 정보화의 긍정적 성과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함.

III.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통과 협력

1. 전자상거래의 등장과 계약법제의 발전

- 과거 계약법의 체계는 대화자간에 대면상태에서의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전자상거래의 도입과 발전은 대금의 결제와 같은 금융체계의 혁신을 가져왔음.
- 우리나라 역시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입법적 노력이 있었음.

2.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른 계약법제의 국제적 융합

- 국제 무역·운송의 증가는 국제적인 통일적인 규범의 도입을 가져왔으며, 특히 1996년의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은 모든 국가들이 서류의 대체 수단으로서의 전자문서의 사용을 규율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결과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통일성 있는 법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되었음.

3.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교류 및 협력을 통한 유라시아 경제발전 방향

-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는 물론 초연결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역할은 무궁무진할 것이며 이에 다른 유라시아 시민들의 거래와 교류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임.

IV. 디지털 실�크로드

1. 디지털 실�크로드 시대의 ICT 협력방안

-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한 유라시아 상호 번영”이라는 비전에 따라 구축된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R&E망인 TEIN망(트랜스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앞으로 디지털 실�크로드 시대의 유라시아의 공동발전과 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2. 디지털 실�크로드 구현을 위한 유라시아 법제 협력 방안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이른바 디지털 실�크로드의 구현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들이 구상하고 있는 국제협력과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또한 기술협력과 경제협력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적인 협력관계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임.

V.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법제소통과 ICT의 역할(결어)

ICT 법제에 있어서 유라시아 국가 간의 협력 강화는 각국의 현재적 필요는 물론, 보다 큰 전망을 토대로 그 추진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아울러 우리나라와 유럽, 아시아의 모든 국가의 협력 확대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인 교류와 협력, 연구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기조연설2 (요약)

I. 머리말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새로이 체제전환을 한 국가들로서 국가개발을 신속하게 이루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립하기를 희망하는 유라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의 법제교류협력의 방향과 대상을 모색해보고자 함

II.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개관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으며,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절차법을 가지고 있음.
- 법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소련과 러시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러시아의 법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부분 러시아 법제도의 변천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음.

III. 유라시아 법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있어서 고려할 점

1. 인권을 기반으로 한 개발

- 단순히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넘어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확장에 기여하고 국가 간 상호협력과 공존의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제 교류 협력을 통해 보편적 인권의 원칙에 대한 인식과 지평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대상국의 특수성 고려

-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 소개와 지식전파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장점에 대하여는 한국이 배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협력을 제공하여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법제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함.

3. 법제교류협력의 대상법제

-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있어서는 서구 여러 나라에 뒤처졌지만 정보화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최선진국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IT 법제를 중심으로 중점적인 법제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Ⅳ. 유라시아와의 법제교류협력 대상으로서의 IT 법제

1. 정보사회와 IT 법제

-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와는 다른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IT 법제라고 칭하는 새로운 법체계가 만들어지게 됨.

2. 우즈베키스탄의 정보화와 법제

- 정보화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유통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결제법 등이 이미 제정되어 어느 정도는 정비되어 있음.
- 다만, 전자 서비스의 핵심법인 전자정부법의 부재로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후에 이와 관련된 모든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재정비해야 하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음.

3. 카자흐스탄의 정보화와 IT 법제

- 카자흐스탄의 IT 법제도는 비교적 잘 발전하여 기본법인 정보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통신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서명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아직 통신과 융합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보호나 공개에 관한 법률은 다소 미흡하다고 알려짐.

4. 유라시아 국가와 IT 법제 교류협력의 구체적 방향

-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전자정부법이 부재한 상황인데, 한국식 전자정부 모델의 도입이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화가 진행되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분야가 법제 교류협력대상으로 바람직함. 예를 들어 시장경제의 피해를 제어할 수 있는 분야인 소비자보호 분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Ⅴ. 맺음말

오랜 기간 동안 서로 교류와 협력을 하여 왔던 우리나라와 유라시아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한 법제분야에 있어 서로 교류 협력을 하는 것은 모두에게 매우 바람직함. 오늘 회의가 참가국들의 정보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III 제1세션

1. 개 요

- 주제 :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
- 시간 : 15:00~16:20(80')
- 장소 : 본회의장(에메랄드홀)
- 사회 : 손희두 행정법제연구실장(한국법제연구원)
- 발제 및 토론자

발 제	• 김민형 서기관(안전행정부) • Davron Ahmatov 국장(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지정토론	• 권현영 교수(광운대학교) • 김수익 법제관(법제처) • 김대옥 부장(LG CNS) • Elyor B. Rakhmanov 국장(우즈베키스탄 ICT 위원회)

2.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가. 주제 발표

주제발표 1 김민형 서기관(안전행정부)

I. 머리말

전자정부 추진관련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돈독한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한국의 전자정부 법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II. 한국의 정보화 법제 현황 개관

한국의 정보화 법체계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중심으로 크게 행정정보화, 민간분야 정보화, 정보화 역기능 방지,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 발전의 네 가지 분야로 정보화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음.

III. 전자정부법 및 기타 관련 법

1. 주요 법률

가. 「전자정부법」

행정서비스의 정보화를 통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로서 행정 업무 및 행정 절차의 정보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과 국민권의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나.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기관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그리고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부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시키는 등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화를 추진하고 정보통신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함.

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최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제공의무를 부여하며, 효과적인 민간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임.

2. 기타 법률

전자정부법제의 또 다른 한 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도임.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 통신비밀의 침해 등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 보호법»,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들이 제정되었음.

IV.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

1. 전자정부 법제의 특징

「전자정부법」에서는 기본 원칙과 방향에 관하여 규정하고, 관련된 법률들을 그 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한국 전자정부 법제의 특징임. 이 방식은 새로운 정보화 분야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법률을 함께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분야에서 그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2. 시사점

전자정부의 성공을 위한 요소로는 강력한 리더십,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정부조직의 개편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전자정부를 성공으로 이끌기가 매우 어려움.

V. 맺음말

이번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를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 법제 관련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함.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번영과 전자정부의 발전을 기원함.

주제발표 2 Davron Ahmatov 국장(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I. 전자정부시스템 근거법규

1. 헌법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의 헌법적 근거는 모든 국민이 정보를 검색하고 입수하고 전파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29조 및 국민의 문서 등 자료열람권을 보장하는 제30조임.

2. 기타 법규

정보통신 분야 관련 규정들이 2013년 한 해 동안 다수(대통령령 9개항 및 국무회의 명령 18개항) 제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이 우즈베키스탄 경제 발전과 국가 개혁에 있어 우선순위로 여겨지고 있음.

II. 전자정부시스템 도입 추진 체계

1. 우즈베키스탄 통신·정보국

2002. 5. 30. 「정보통신 기술 도입과 전산화의 지속적 추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제정을 계기로 전자정부 분야의 활동이 이미 10년 전에 시작되었고, 이 대통령령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우편·통신국이 우즈베키스탄 통신·정보국으로 개편되면서 IT 제도화의 계기가 되었음.

2. 통신·정보화·통신기술 정부위원회

IT 정책을 총괄하는 통신·정보화·통신기술 정부위원회 (the State Committee for Communication, Informatiz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CCITT)가 설립되어 법·제도의 개선과 통신 인프라 현대화, 전자정부 구축, 인터넷 네트워크 국가 영역 개발, 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고 있음

3. 전자정부 학술 센터

대통령령과 국무회의 명령에 의거하여, 전자정부 시스템의 일환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이 전반적으로 타슈켄트대학교 측에 맡겨짐. 대학교 산하에 전자정부 학술 센터가 설립되어, 지위와 업무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III. 2012~2013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과정

- 2012. 8. 29.
 - 「정보통신 기술 발전 분야의 비평적 업무평가를 위한 실무팀 창설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 2012. 10. 16.
 - 「통신, 정보화, 통신기술,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가속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창설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 원격 양방향 정부서비스 제공을 전 분야로 확대
 - 전자정부시스템 도입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과 콘셉트 개발 담당 실무팀 구성
- 2012. 12. 8.
 - 전자정부시스템 도입 종합 프로그램과 콘셉트 개발담당 실무팀 창설에 관한 국무회의 지시 (기간 : 2012년~2017년)
 - 주요 기본 요소, 기술, 실현 단계 확정 및 정부기관, 정부기관-기업 주체, 정부기관-국민 별 부처 간 정보교류 메커니즘 개발
- 2013. 1. 8.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국가·경제 관리기관, 지역행정부와 법인·개인 간 상호 협력의 지속적 개선 방안에 관한 국무회의 명령에 의해 기본적인 양방향 정부서비스 등록 목록이 승인됨
 - 정부 정보자원의 등록이 통신·정보화·통신기술 정부위원회(the State Committee for Communication, Informatiz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CCITT)의 Uzinfokom 센터에 맡겨짐

- 2013. 4. 1.
 - 전자정부시스템 도입 종합프로그램과 콘셉트 확립에 대한 국무회의 결정

IV. 당면 과제

1. 효율적인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의 일부 조직적·법적 측면들이 충분히 조율되지 못함.
 - 특히 양방향 정부서비스는 해당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정부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온전한 전자화를 위해 정부기관이 정보 시스템을 적용하여 개인과 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강행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2. 전자정부시스템의 지속적 개발을 목적으로 전자정부법안이 준비 중인데, 이 법안이 채택된다면 이 분야의 업무와 활동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적 기준을 체계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토론

토론 1 권헌영 교수(광운대학교)

전자정부 법제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몇 가지를 토론하고자 함.

- 첫째는 정보기술과 법제도의 관계에 관하여 법제전문가, 행정전문가 및 정보기술전문가가 공통의 인식을 가져야 함. 법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전자정부 및 IT 분야에서 행정전문가와 정보기술전문가의 공동 작업은 물론 법제도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함.
- 둘째는 분야별 제도의 협력 문제를 들 수 있음. 전자정부는 주로 행정 분야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것이지만, 국가 전체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여 운영되므로, 국가 전체의 IT 관련 사항을 다루는 법제와 전자정부에 특화된 내용을 다루는 법제가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전자정부에서 핵심적 조정 및 조화는 결국 시스템 및 데이터의 연계 또는 통합이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은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임. 제도는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
- 셋째는 헌법 및 행정법적인 문제임. 우즈베키스탄의 발표내용에는 헌법상 정보자유권과 대통령의 국민권리보장에 관한 확고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구체적 법이나 정보시스템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법령의 개정이 전자정부시스템의 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토론 2 김수익 법제관(법제처)

우리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함.

- 전자정부는 행정의 능률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통한 추진목표의 설정 및 집행과 평가가 필요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개별법에서 공동이용의 대상과 범위 및 이용에 관한 책임의 문제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전자정부법」의 관련 규정만으로는 제공받고자 하는 사무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보유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꺼리는 공무원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음.
- 평등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별로 전자정부 사업추진이 통일된 표준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각 기관 사이의 업무가 중복되고, 정책의 추진 방향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행정의 비효율성 증대 및 국민신뢰 저하 문제 발생

토론 3 김대옥 부장(LG CNS)

- 근래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위원회와 함께 LG CNS-우즈베키스탄 합작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토론 기회에 참여하게 되어 향후 합작회사가 성공적으로 설립 및 운영될 수 있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의욕적으로 전자정부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각 부처별 예산으로 별개의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 정부는 전자정부 전담조직에 좀 더 힘을 실어 주고 전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한 곳으로 집중해 국가 경영에 기틀이 되는 사업들을 선 추진한 다음 해당 사업들이 정착되면 각 부처별 연계 및 대민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 방향임.
 - 따라서 이러한 체계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제적인 작업이 향후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시발점을 끊을 수 있는 필수적인 사항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토론 4 Elyor B. Rakhmanov 국장(우즈베키스탄 ICT 위원회)

- 우즈베키스탄의 IT 발전 단계를 설명 드리면, ① 시작 단계(2000년~2002년) ② IT 도입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2003년~2007년) ③ 국가 IT 도입 체제 개시 단계(2008년~2012년) ④ 생활의 전 분야에 걸친 IT 확산 단계(2012년~현재)로 나눌 수 있음.
- 현재 IT 분야 법률은 「정보화법」, 「전자디지털서명법」, 「전자문서유통법」, 「전자지불법」 등이 있으며, 현재 전자정부 법안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안도 마련되었음.
 - 전자정부의 확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가 남아 있으며 특히,
 - ① 정부업무에 관한 법률
 - ② 개인정보보호법
 - ③ 공공데이터법
 - ④ 정부서비스 개념의 법적 정의와 행정절차에 관한 법
 - ⑤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대한 일반 규정
 - ⑥ 전자정부시스템 내 단일 신분 확인 시스템에 관한 규정등의 도입이 시급함.
- 정보기술과 전자정부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전반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여건 마련, 국가 및 경제 관리 기구 활동의 투명성 제고, 이를 통한 기업 활동 환경의 본질적인 개선, 그리고 핵심 실물경제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그 목표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함.

3. 현장 사진



4. 주제발표문 및 토론문

주제발표 1 김민형 서기관(안전행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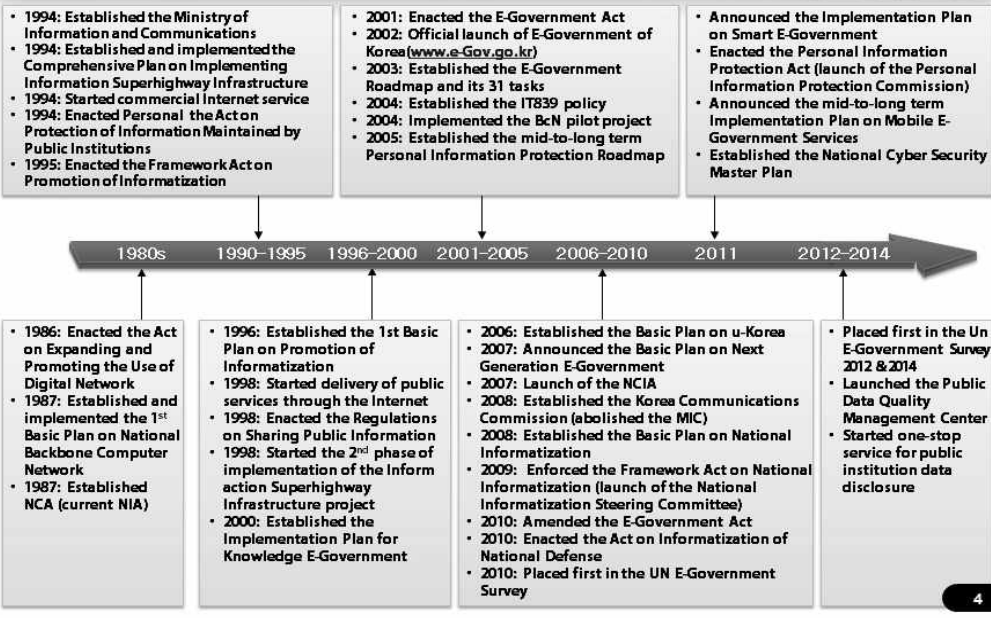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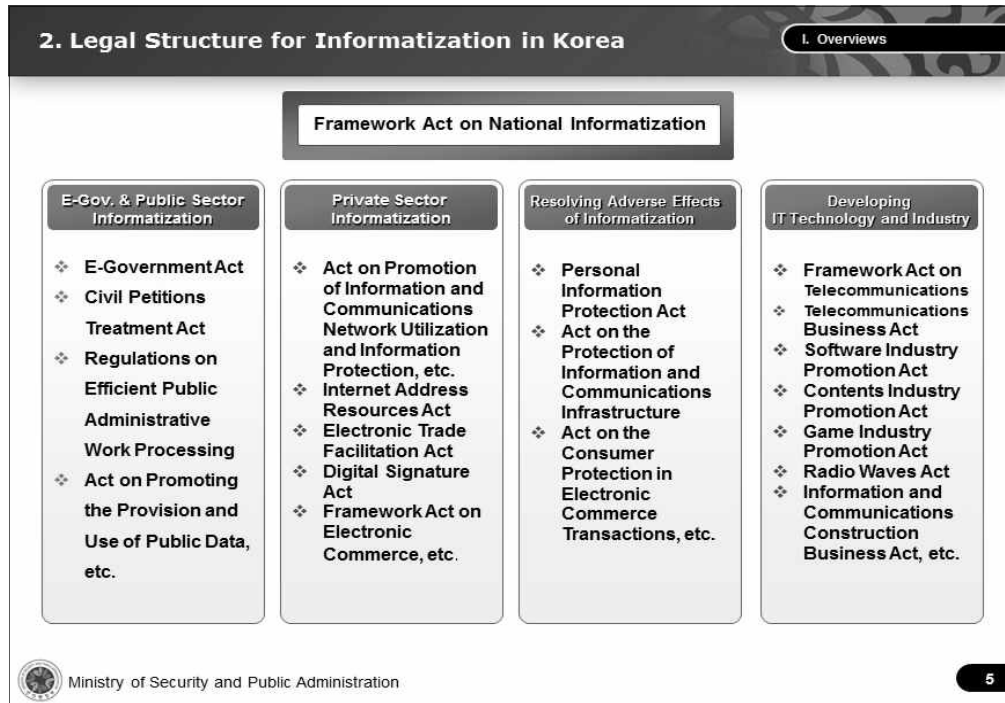


I. Overview of Legal Framework for Informatization in Korea

1. History of Legal Framework for Informatization in Korea

I. Overviews





1-1. E-Government Act

II. Major Laws

1 Purpose of Enactment

- Promote projects that will realize e-government by defining basic principles · procedures and implementation methods as well as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by increasing government efficiency · transparency and openness
- Improve the rights of citizens and quality of public service delivery through inform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its processes by setting down the principles for realization and management of e-government



2 Contents of E-Government Act

- Provide and promote the utilization of e-government public services
- Digital public administration
- Expand sharing of public data and ensure security and protection
- Implement and utilize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 Efficiently manage information resource
- Standardize e-government and expand shared services
- Implement e-government and regional informatization projects and manage their performance

Act on Promotion of Digitalization of Public Work Process for Realization of E-Government (2001)

- Re-design existing organization and work process to facilitate the ICT adoption
- Ensuring Productivity, transparency and democracy of government agencies

➔

E-Government Act (2007)

- Expand sharing of public data
- Security Enhancements
- Avoid overlapping investment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7

1-2. E-Government Act

II. Major Laws

Provide principles for achieving and operating e-government

- Digitalization of civil services
- Innov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improvement of productivity/efficiency
- Ensuring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information systems
-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 Disclosur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expansion of its shared use
- Prevention of redundant investment and improvement of interoperability

Adopt e-document and facilitate electronic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affairs

- All documents in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re basically written in electronic forms
- Specify to re-design the existing organizations and business procedures and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for ICT adoption
 - Government workers teleworking or attending training courses via ICT network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8

1-3. E-Government Act

II. Major Laws

Lay the groundwork for and give shape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 Make and execute plans for reducing paperwork
- Public information sharing comes first when checking information for handling civil service applications
- E-document exchange and the coverag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is expanded to all administrative and public institutions

Expand electronic processing of civil service requests

- Establish and operate an electronic civil service window
- Paper documents for civil service can be replaced with e-documents

Offer standards for developing and providing e-government services

- Ensure accessibility, improve user safety and convenience, secure recency, etc.
- Develop combined services by integrating and connect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that belongs to each agency
 - Promoting citizen welfare, living safety, business activities, etc
- Adopt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to pan-government level & each organization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9

2.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II. Major Laws

1 Purpose of Enactment

- Define implementation structure in order to build the basis for ICT industry and promote informatization throughout the nation
- Present principles and basic direction of national informatization that can cope with the changes in the ICT environment and realiz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by identifying the necessary steps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related policies

2 Contents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 Basic and mid-to-long term development direction of policy for national informatization
- Regional informatization
- Support for informatization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financial • manufacturing industries
- Creation of information culture and resolving the digital divide
- Protection of the rights of users and intellectual property
- Standards and sharing of data
- Improving legal framework related to national informatization
-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related to national informatization
- Securing and managing funding for national informatization

Framework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zation (1995)

- Promotion of Informatization
- Composition of IT infrastructure

➔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2009)

- Focus on Information Literacy
- Realization of Knowledge-based society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0

3.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1 Purpose of Enactment

- Prescribe matters for promoting the provision and use of data held and managed by public institutions in order to guarantee citizens' right to use public data
- contribute to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and to developing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utilization of such public data in the private sector.



2 Contents of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 Promote the use public data and promote universal access to the use .
- Establish Public Data Strategy Committee, Master Plans for Promoting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and Public Data Utilization Support Center
- Evaluate the status of the provision and management of public data by public institutions
- Formulate and announce guidelines for managing public data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2013)

- Promote the use of public data and guarantee citizens' right to use public data
- Formulate and announce guidelines for managing public data
- appoint a responsible officer who will exercise overall control of the affairs promoting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 promote the activities to raise citizens' awareness about the use of public data and to promote the us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1

4.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I. Major Laws

Purpose of Enactment

- Protect the privacy of citizens by strengthening remedies for invasion of privacy based on principles and processing standards for personal information in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and guarantee the rights and benefits of personal information (improvement of digital human rights throug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ivacy protection)



Cont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Implement the 8 principle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OECD
- Establis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 Guarantee the rights of the subject of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
- Class action law suit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aintained by Public Institutions (1994)

-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institutions
- electronic personal information files(onlin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011)

- private and public sector
- All Personal information(Online, offline)
- Strengthening of citizen's remedies(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Class action)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2

5. Other E-Government Related Laws

II. Major Laws

**Laws on ICT Infrastructure
& Promotion of ICT Industry**

-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 Radio Waves A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Act
-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Laws on Fostering Information
Society by Promoting the Use of ICT**

- Digital Signature Act
- Framework Act on E-Commerce and E-Document
-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Laws for Resolving Legal Issues
on the Use of ICT**

-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Electronic Bills Act
- Electronic Trade Facilitations Act

**Laws on Informatization for Resolving
Social Issues (Cyber-Crime, etc)**

-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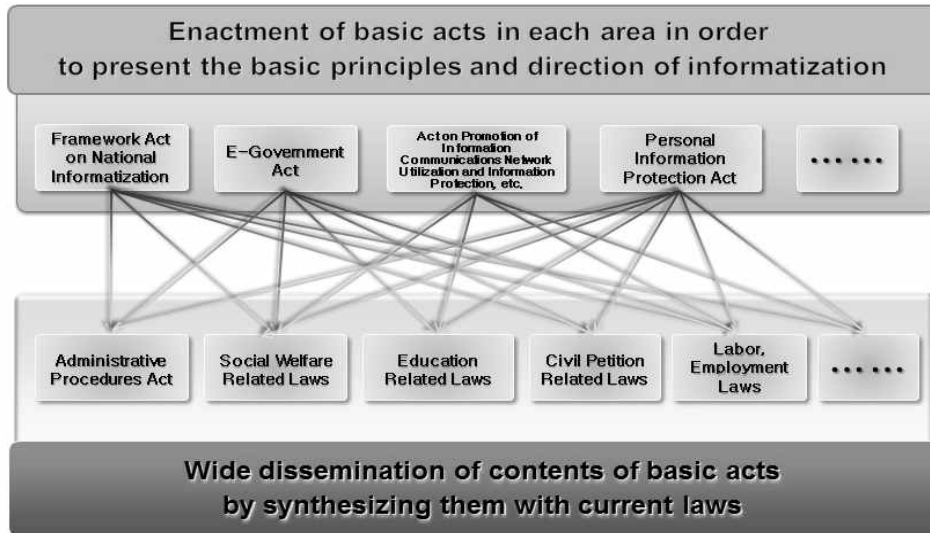
13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III.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Legislation on E-Government

1. Characteristics of Laws on Informatization in Korea

III.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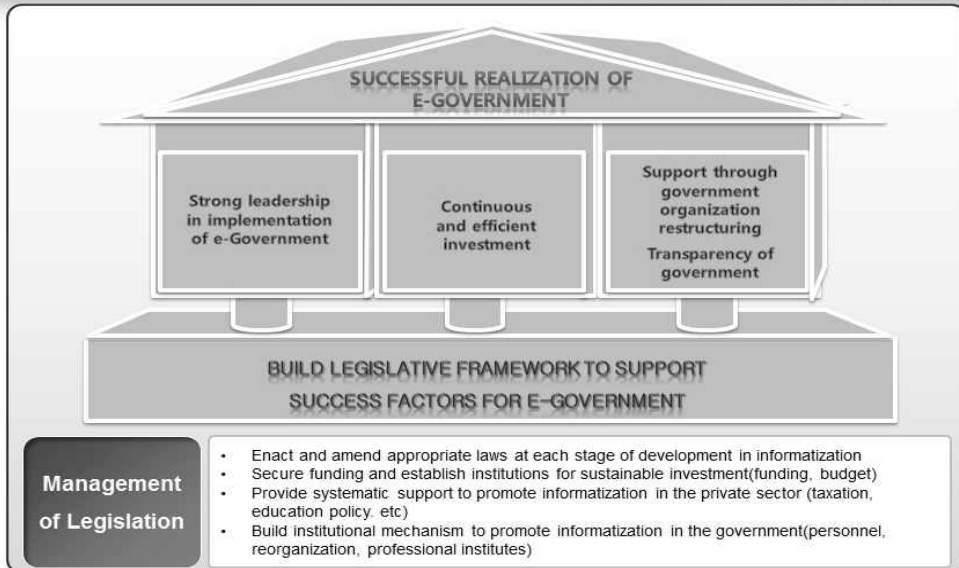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5

2. Success Factors for National Informatization

III.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6



주제발표 2

Davron Ahmatov 국장(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е основы развития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Статья 29. «Каждый имеет право на свободу мысли, слова и убеждений. Каждый имеет право искать, получать и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любую информацию,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направленной против существующего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троя и других ограничений,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законом».

Статья 30. «Вс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рганы,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и должностные лиц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язаны обеспечивать гражда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ознакомления с документами, решениями и и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затрагивающими их права и интересы»

Нормативная база для развития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Только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с небольшим было принят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нормативно-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прямо или косвенно касающихся сферы ИКТ, – **9 постановлений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 18 постановлений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Все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вопрос внедрения ИКТ считается приоритетным в развитии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и продолжении реформ в стране.

Нормативная база для развития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Назван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акт	Описание	Дата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О гарантиях и свободе доступа к информац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Закон, определяет основные принципы свободы и гарантии доступа к информации, формы запроса и сроки рассмотрения, обеспечение доступа к информаци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достоверность информации и за нарушение права на информацию	24.04.1997 г.
«О принципах и гарантиях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Закон, определяет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принципы и гарантии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 открытость и гласность информации, общедоступность и достоверность информации, гарантии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 порядок получ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литику в области обеспече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о принципах и гарантиях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	12.12.2002 г.
«Об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Закон определяет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и на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област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в област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правовой режим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ресурсов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документирование информации, право собственности на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ресурсы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сист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ресурсы, категории доступа к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ресурсам, организацию защиты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ресурсов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об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11.12.2003 г.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Закон, определяет основные понятия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в обла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специально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орган, центр регистрации, условия признания равнозначности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и собственноручной подписи, средства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создание закрытых ключей и открытых ключей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выдачу и порядок хранения сертификата ключа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11.12.2003 г.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Закон, регулирует отношения в сфере электронного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а и электронного документа, определя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литику в области электронного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а, юридическую силу электронного документа,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29.04.2004 г.
«Об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Закон, регулирует отношения в области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определяет правовое положение участников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условия и заключение договора в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об электронной коммерции	29.04.2004 г.
«Об электронных платежа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Закон, регулирует отношения в области электронных платежей, определяет платежную систему и ее виды, правила платежной системы, субъекты платежной системы, права и обязанности членов и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латежной системы	16.12.2005 г.

«О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компьютеризации и внедрени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Указ направлен на обеспечение формир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массовое внедрение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о всех сферах экономики и жизни общества современных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редств компьютерной техники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й, полное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растущих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потребностей граждан, создание 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вхождения в миров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сообщество и расширение доступа к мировым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ресурсам.	30.05.2002 г.
«О мерах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с юридическими и физическими лицами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становление направлено на обеспеч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оперативности их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физическими и юридическими лицами посредством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а также широкого доступа к услугам, предоставляемым орган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23.08.2007 г.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становление направлено на гарантирование повыш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а местах, обеспечение широк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овременных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сфер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21.03.2012 г.

«О мерах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портал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с учетом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нтерактив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становление, направленное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исполнения Закон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т 21 марта 2012 года N ПП-1730 "О мерах по дальнейшему внедрению и развитию современных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а также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полноценного обмена данными в электронной форме, ускорение процедур оформления запросов,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убъект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и населения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ами на основ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30.12.2012 г.
«О мерах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Центра развития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Центра обеспече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комитете связ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оздание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комитете связ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Центра развития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Центра обеспече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форм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дной из задач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выработк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обеспечени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мплексов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ресурсов и баз данных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16.09.2013г.

Этапы внедрения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2012-2013 гг.

Республика Узбекистан начала активную работу в сфере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еще 10 лет назад, когда 30 мая 2002 года Президент подписал Указ №УП-3080 «О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компьютеризации и внедрени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инятие данного указа также послужило поводом для институционализации ИКТ, преобразовав Узбек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чты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й в **Узбекское агентство связи 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агентства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стало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того, что внедрение ИКТ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руководством страны как одна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дач развития и модернизации экономики и остальных сфер. Чтобы ускорить этот процесс и обеспечить его плановость, необходим был госорган, который осуществлял бы управление всей эт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а не только координацией работы структур отрасли.

Этапы внедрения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2012-2013 гг.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структуры нового комитета осуществлялось в тес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экспертам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значально в структуре комитета н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лся **отдел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развития ИКТ**, однако с учетом мнений коре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такой отдел был создан.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труктура комитета выстроен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 любой внутренний процесс здесь основан на трех принципах – планировании, реализации и контроле. Помимо отдел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есть **управление ИКТ**, которое занимается реализацией поставленных задач, и отдел мониторинга и контроля, который независимо от других отделов оценивает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ов.

С образованием комитета на него был возложен ряд важных задач –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модернизация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остроение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егмента сети интернет, подготовка кадров и др.

Этапы внедрения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2012-2013 гг.

Согласно Постановл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Ташкент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озданию новых факультетов и направлений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Проректором университета был назначен консультант по ИКТ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участием которого решаются вопросы улучшения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Университету в целом отведена большая роль в подготовке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рамках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и ВУЗе создан учебный **Центр по электронн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который будет обучать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всех госслужащих, независимо от их должностей и вид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Такая работа ведется уже давно, сейчас этот процесс стал системным.

Этапы внедрения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2012-2013 гг.



Этапы внедрения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2012-2013 гг.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в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феры Узбекистана имеет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И.Каримова «О мерах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т 27 июня 2013 года,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была утверждена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етей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вязи в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на 2013-2020 год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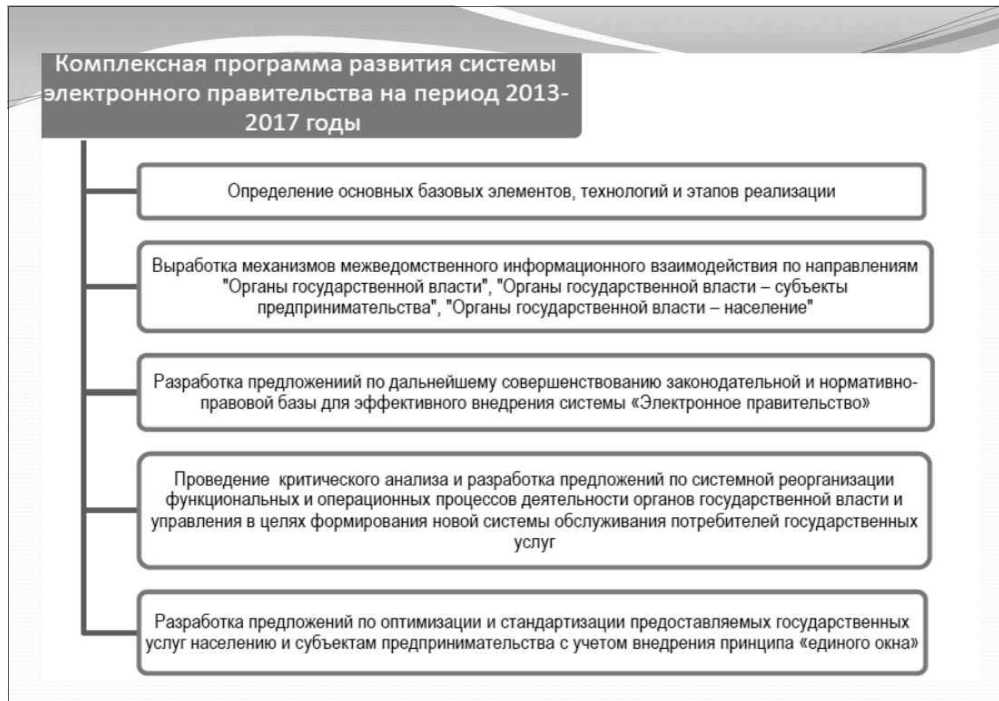
Комплексная программа,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компонентов.

Первый – это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ей расширение доступа к широкополосным сетям передачи данных, развитие мобильных технологий, увеличение каналов передачи данных между областями и т.д.

Второй важный компонент –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 почти из 30 проектов. Согласно программе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создание центральных баз данных, которыми буд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все министерства и ведомства.

Перед ними поставлены важнейшие цели и задачи,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ускоренное развити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ресурсов, систем и сетей страны. Деятельность Центра развития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целена на выработку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государства с населением и субъекта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Узбекистане. Призванный обеспечить едины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подход к формированию этой системы,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й согласованный механизм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разработки и интегр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ресурсов и баз данных, используемых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ах, центр будет также проводить анализ и исследование мировых тенденций и опыта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Поэтому одними из важ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работы центра являются системная реорганизация функциональных и опе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подготовка предложений по оптимизаци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и внедрению инновационных механизмов управления бизнес-процессами, связанных с оказа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Этапы внедрения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2012-2013 гг.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системе «Электрон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ализовано более двадцати проектов. В их чис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портал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www.gov.uz),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му каждый гражданин или субъек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изаций и учреждений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л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о всем элемент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а также направить официальный запрос в тот или и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орган в электронной форме. На портале также опубликован полный реестр базовых интерактив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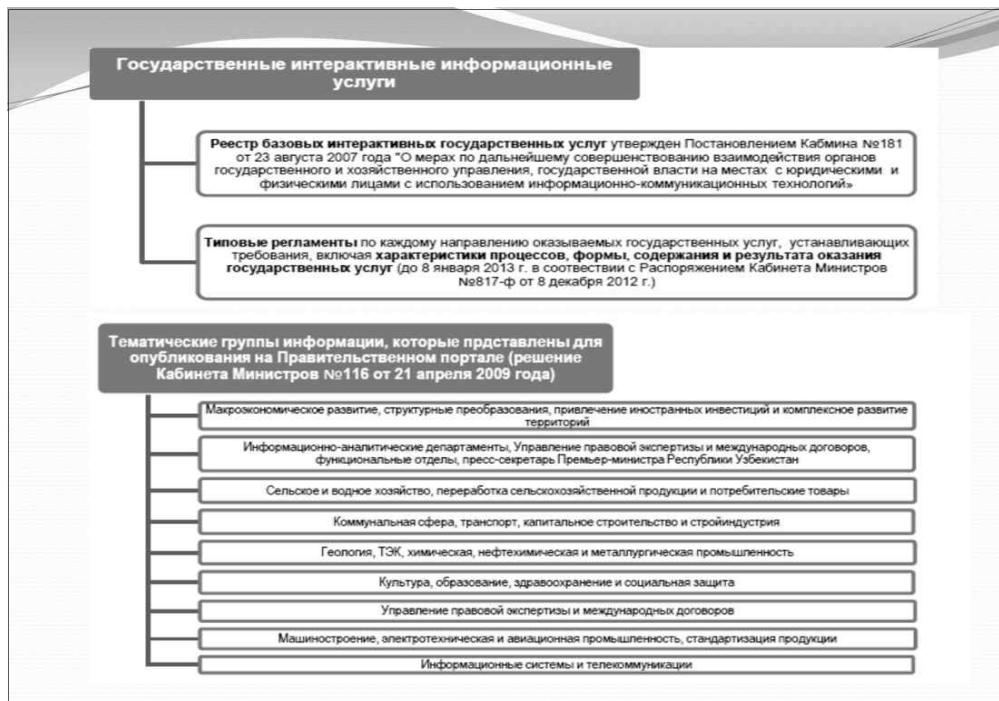
Этапы внедрения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2012-2013 гг.

Логическим продолжением работ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тал запуск в интернете **Единого портала интерактив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my.gov.uz)** в режиме «единого окн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н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свыше **170 интерактивных услуг по более 20 направлениям** и продолжает развиваться, расширяя охва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и совершенствуя функции.

Основными формам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рамках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является:

-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между собой.
-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с населением.
-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с субъекта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Предстоящие вызовы

Недостаточно урегулированы некоторые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правовые аспекты построения эффективной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траслевыми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ми актами не регламентируется обязательная электронизац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что негативно влияет на степень развития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В частности, интерактив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слуги не нашли своего отраж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законах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сходя из этого, возник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порядка оказания интерактив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Для полной электронизации системы оказ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необходимо внесение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утем установления императивных норм по оказан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ами услуг физическим и юридическим лицам с примене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Например, в статье 4 Закон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обращениях граждан»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обращения граждан вносятся в устной либо письменной форме. Однако н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положение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гражданам возможности обращения в электронной форме.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н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равенство письменной и электронной форм сделок и возможность электронного оказания услуг. Например, ст. 105 ГК РУз определяет, что сделки совершаются устно или в письменной форме.

В целях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готавливается проект закон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ринятие которого послужит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правовых основ работы и мероприятий в да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и систематизации правовых норм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Электрон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 форма орган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торая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вышению эффективности, открытости и прозрачности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нового типа государств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на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потребностей граждан.

ОЖИДАЕМЫЕ РЕЗУЛЬТАТЫ

Решение вышеуказанных задач послужит:

- организацию электронного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а внут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максимальный перевод в электронную форму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государства и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 использованию сети Интернет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интерактивной связи и установления эффективной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власти с населением;
- формирование диалогической по форме политическ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обеспечивающей контроль за управлен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ак в процессе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так и в их реализации.

Спасибо за внимание!

토론 1 권헌영 교수(광운대학교)

전자정부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 발전방향

1. 법제교류 및 협력은 국가 간 협력 모델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제도는 국가 전체의 행위규범 중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또 정부 정책이나 행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도에 관한 협력은 국가의 행정은 물론 해당 분야의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표준화된 규범적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도협력이 필요한 단계는 국가 간 교류협력 행위가 단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전자정부 관련 제도협력이 이러한 사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양국의 교류협력은 전자정부 단위 사업 분야에 국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문가를 고위정책담당자로 임용하여 전자정부정책 및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인적·제도적 협력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법정부 고위공무원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전자정부 정책은 물론 법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를 실시하고 돌아간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런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양국 간 제도 협력이 전자정부 분야 협력 사업은 물론 IT 산업 전반과 행정 제도의 공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3.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행정과 전자정부 발전과정에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중심의 국가발전 모델을 갖고 있다는 점과 강력한 국가지도자의 추진력이 산업적 인프라와 IT 인프라 및 행정혁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일어나는 IT인프라사업과 전자정부시스템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종합적 발전이나 해당 인프라 및 시스템의 지속적 운용과 시스템 이용관계가 일반화될 때에는 법제도적 자원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기술과 법제도의 상관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살피면서 전자 정부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4. 전자정부 법제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몇 가지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보기술과 법제도의 관계에 관하여 법제전문가, 행정전문가 및 정보기술전문가가 공통의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법제도가 기술을 선도하는가 아니면 기술이 제도를 선도하는가의 문제에서 기술결정론과 제도 결정론의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법제, 행정 및 정보기술 전문가들이 이 두 가지 입장을 적절히 조화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정부용 전자서명을 제도화하고자 할 때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과 전자정부용 전자서명제도를 별도로 만들고 시장을 유도하는 방안이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제도가 기술이나 시장상황을 살핀 후 사후적으로 규범을 형성해 가는 것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IT분야나 전자정부 분야에서는 선제적 법제도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우선 순위의 결정하거나 특정한 분야의 시스템 및 정보기술도입 등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정보화 및 전자정부 발전계획의 수립 시에 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기술적 기반과 제도적 기반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발전국가 모델을 갖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 추진체계의 확립 등에서 선제적 법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전자정부 및 IT 분야에서 행정 전문가와 정보기술 전문가의 공동 작업은 물론 법제도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5. 둘째는 분야별 제도의 협력 문제입니다. 전자정부는 주로 행정 분야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정보시스템은 국가 전체의 IT인프라를 바탕으로 하여 운용됩니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정보화 및 정보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정보통신 산업 규율 법령과 전자정부 관련 법령의 역할관계를 잘 정립하여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IT 관련 사항을 다루는 법제와 전자정부에 특화된 내용을 다루는 법제가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 정보보호, 데이터산업, 전자서명인증 등의 분야에서 양 자의 적절한 조화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제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기본관계 또는 일반관계와 특수 또는 특별관계를 분리해 내고 또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전자정부 내부에서는 각 행정영역 간의 관계정리에도 동일한 숙제가 적용됩니다. 행정추진체계에서는 수평관계와 수직관계의 논의와도 연결됩니다. 분야별 행정을 수직적으로 구분한 정부조직에서 정보기술을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수평적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전자정부입니다. 따라서 양자의 협력과 조화는 전자정부정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전자정부정책의 기획 및 조정기능을 대통령이나 수상 등과 같은 최고지도자의 소관으로 하고 위원회 등을 운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자정부에서 핵심적 조정 및 조화는 결국 시스템 및 데이터의 연계 또는 통합이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은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이 됩니다. 제도는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6. 셋째는 헌법 및 행정법적 문제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발표내용에는 헌법상 정보자유권과 대통령의 국민권리보장에 관한 확고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구체적 행정법이나 구체적 정보시스템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국민의 권리에 관하여 민원관계법,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데이터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양한 행정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자정부법을 제정하고, 전자적 행정업무처리를 의무화하였으며 국민과의 소통에서도 전자적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현장에서는 종이문서를 통해 일하도록 하는 기존 행정법이 그대로 적용하는 관행이 있어서 모든 행정관계법규를 조사하여 전자적 업무 처리를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법령의 개정이 전자정부시스템의 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7. 이상에서 전자정부 법제정책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양 국의 법제교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자정부 발전에서 법제전문가의 참여와 법제교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2 김수익 법제관(법제처)

전자정부 관련 법제 발전방향

발표를 통하여 한국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발전과정과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과정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오늘 회의가 한국에서의 전자정부 법제 개선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준비 중인 전자정부에 관한 법안의 제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전자정부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1. 국민중심 전자정부 구현 필요

국민중심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정부3.0**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공공 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제처에서도 현행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한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210개의 서술형 생활법령 정보, 18개 생활분야의 사례형 법령정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우리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 실현 방법으로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전자적 행정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행정의 능률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추진 과정에서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통한 추진목표의 설정 및 집행과 평가가 필요하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구체화하지 못하는 경우 전자정부 추진 결과는 관료중심의 감시형 정부로 귀결될 수 있다.

국민중심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국민이** 행정의 주체로서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가 용이하도록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정부법」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자정부 추진계획의 수립과 집행 시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의 전자정부 사업 추진 시에 있어 민간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제정비

행정기관이 개인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서버에 집적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행정기관 역시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정보전달의 요청 없이 업무를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이용되는 정보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다원적인 정보수집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정보의 사안별·개인별 편차를 줄일 수 있다.

현행 「전자정부법」에서도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나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으로 하면서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으면 과세정보나 부동산등기, 주민등록 등의 정보는 각 개별 법에 따른 심사나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제공 받고자 하는 사무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보유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꺼리는 공무원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개별법에서 공동 이용의 대상과 범위 및 이용에 관한 책임의 문제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에서 최근 이러한 점들을 정리하여 **행정정보의 공유를 위한 법령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정비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최근의 입법동향으로는 지난 7월 29일부터 개정·시행된 「전자정부법」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데이터 활용 공통 기반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관리되는 전자적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사회의 큰 현안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 때에 데이터 활용 공통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개별적인 분석시스템 없이도 효율적인 빅데이터의 분석과 제공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별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분석해준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저장해 두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다운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국가기관에서도 도입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보보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이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되고 이의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3. 전자정부서비스 접근성 및 호환성 향상 필요

평등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전자정부서비스는 기술 중립성 및 호환성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별로 전자정부 사업추진이 통일된 표준 없이 이루어져 각 기관 사이의 업무중복, 정책의 추진방향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발단계부터 안전행정부 등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계획을 공유**하고 **통일된 표준을 마련**하여 전자정부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 활성화와 국민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비롯한 전자정부서비스가 발전되고 확대될수록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그림자처럼 동시에 따라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D-DOS 공격에 따른 공공기관 홈페이지 다운 사례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신속성’과 ‘국제성’이라는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사례는 국가안보와도 관련되는 문제로서 큰 우려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의 사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 필요와 침해정보의 관련 기관 간 공유** 등 협조를 담보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건강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등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반드시 법령에 수집근거가 있어야 수집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바 있다(2014. 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식별정보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므로 법령의 근거 외에도 정보주체에게 그 처리사실을 반드시 통보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이중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년 초에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각 개별법 간의 보호수준의 차이로 인한 혼란의 발생과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부족한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 분야 법령별로 개인정보의 처리절차 및 기준을 세분화**하고 **책임성 강화** 등 그 업무단위에서 실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토론 3 김대옥 부장(LG CNS)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제언

1. 안녕하세요, LG CNS 해외사업개발팀 김대옥 부장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법제처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희 LG CNS는 근래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위원회와 함께 LG CNS-우즈베키스탄 합작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토론 기회에 참여하게 되어 참석자 분들과 유익한 얘기를 통해 향후 합작회사가 성공적으로 설립 및 운영될 수 있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2. 말씀 나온 김에 설립 준비 중인 LG CNS-우즈베키스탄 합작회사에 대해 잠깐 언급 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찍이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 분야의 발전에 대해 대통령 이화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등을 수립하여 발전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와 많은 ISP/BPR 및 사전타당성 조사, MOU 체결 등 많은 교류 활동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자체적인 역량만으로 육성하기에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걸린다는 것을 파악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함께할 파트너를 작년부터 찾고 있었으며,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 분야에서 국내외 많은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LG CNS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법적, 재무적, 사업적 측면의 협상 및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합작회사가 예정대로 연내 설립되면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 분야 사업들을 바로 착수하여 실질적인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 분야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저도 합작회사 설립 준비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몇 번 다녀왔었습니다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 분야에 대한 다수의 대통령 결의안이 일찍이 발표된 바 있으며, 그에 파생한 많은 사업 계획들이 구체화되어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런칭이 임박한 사업들도 있어 매우 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관계자 분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지 정보화 발전에 대한 강한 열의 읽을 수 있었으며, 실무자 분들께 느껴지는 강한 열정과 자신감에 감명 받아 이것이 우즈베키스탄 힘의 원천이구나 하는 인상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열정들이 합작회사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 분야의 결실로 맺어질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4. 이렇게 현지 사업현황을 파악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계획이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는 있으나 다소 분산되어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정부 사업은 분야별, 부처별로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걸어온 히스토리를 비추어 보면 가장 먼저 전산화가 필요한 분야가 국가 경영에 기본이 되는 주민정보, 재산권, 국세정보에 대한 DB 구축사업 및 행정, 금융, 국방 등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꼽습니다.

이들이 전자정부의 첫 단추를 껴는 전자정부 기반조성기에 필요한 선결사업이며 또한 무엇보다 자동화, 효율화가 포커스가 되는 시기입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이 이 중요한 기로에 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각 부처별 예산으로 별개의 작은 사업들을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소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정부는 전자정부 전담조직에 좀 더 힘을 실어 주고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한 곳으로 집중해 앞서 말씀 드린 국가경영에 기틀이 되는 사업들을 선 추진하고, 해당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바탕 위에서 그 다음 단계인, 각 부처별 연계 및 대민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는 전자정부 성장기로 연결되는 모습이 바람직한 발전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제적인 작업이 향후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시발점을 꿰을 수 있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작회사와 같은 전자정부 현황에 정통한 특정 기업이 기존 진행되는 군소 사업들을 모두 망라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적합한 효율적인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며 그 기반으로 말씀드렸던 법제적인 작업도 가능하리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5. 참고로 추가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는 전자정부 성숙기로써, ICT 활용 고도화를 통해 정부기관 업무를 고도화하고 국민참여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는 단계이며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발전단계는 이미 여러 전자정부 관련 학술연구를 통해서도 정립된 부분이며 현재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현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 또 한 가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준비하며 느낀 점은 역시 환전 문제입니다. 기업으로서 사업화를 검토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익성인데 잘 아시겠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외화송금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본국 송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합작회사를 준비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가장 요청 드렸던 부분도 외화 송금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외국인투자보장법 등에 의해 과실 송금, 내국인과 평등한 대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혜택, 등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조건이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길어 해외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업 착수 전 가장 고민이 지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국의 경제기반 보호나 경제정책의 큰 흐름이 우선하여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우즈베키스탄의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 분야에 해외 기업의 활발한 진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외화 송금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고 이러한 법제들이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충분히 홍보되어야 해외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을 사업 측면에 더욱 매력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 및 정보통신, 전자정부 분야의 발전에 큰 탄력을 줄 수 있는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7.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점에서 해외 기업들에 대하여 규모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레벨에 따라 외화 송금 규모를 자유롭게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면 많은 해외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내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고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우즈베키스탄 경제 및 정보통신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사업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언어 혼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우즈베키스탄어 사용을 공식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어가 많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는 각종 공문서에도 우즈베키스탄어와 러시아어를 병기해야 하거나 심지어 많은 자료들이 여전히 러시아어로 작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DB 구축, UI 설계 등 정보통신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제도적인 강제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단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기반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8. 저는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합작회사를 준비하면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및 정부조직과 실무 관계자분까지 우즈베키스탄 전체적인 전자정부에 대한 강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정보 분야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민주사회 형성의 초석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이나 관련한 헌법 조항을 통해서도 우즈베키스탄의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의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오늘 제가 드린 몇 가지 제언을 바탕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논의를 거쳐 이러한 밝은 미래가 좀 더 가까이 현실적으로 다가 올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토론 4

Elyor B. Rakhmanov 국장(우즈베키스탄 ICT 위원회)

전자정부 제도 법제의 활용: 우즈베키스탄의 경험

1. 존경하는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즈베키스탄 국가 통신·정보화 및 통신기술 위원회(이하 우즈베키스탄 ICT 위원회)’ 그리고 ‘전자정부 개발센터’를 대표하여 본 회의의 주최측에 따뜻한 환영과 이 중요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점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행사가 높은 수준의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되고 의도한 목표들을 달성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2. 이제 “전자정부제도 법제의 활용: 우즈베키스탄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주 간단히 우즈베키스탄의 IT 발전 역사와 그 몇 가지 발전 단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1) 우즈베키스탄에서 IT 발전의 시작 단계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단계적인 IT 도입을 통한 국가 관리 향상을 위한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우즈베키스탄 통신 연구소가 타슈켄트 정보기술 대학에 설립되어 IT 분야의 자격 있는 전문가 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 2) 두 번째 단계는 2003년부터 2007년에 이르는 기간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IT 분야의 기본적인 법률인 「정보화법」, 「전자문서유통법」, 「전자디지털서명법」 등을 제정함으로 전반적인 IT 도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정부기관의 컴퓨터화와 설비를 갖추기 위한 국가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고정 통신망의 대규모 디지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 3) 2008년부터 2012년의 기간은 국가 IT 도입 체제들의 개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정부기관으로 국내 정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전자정보 및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정부 포털사이트인 gov.uz를 구축하여 거의 모든 정부 기관들이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개설함으로 단방향 전자 서비스(전자 신청서/청구서/문의서 등의 제출)를 시작하였으며, 이동 통신 역시 급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 4)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기간은 생활의 전 분야에 걸친 IT 확산의 기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국가 관리 조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전자정부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28개, 실물 경제 분야의 프로젝트 86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국가 지도자들이 알게 된 사실은 경제 전 분야와 일상생활에 최신 정보통신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추진 노력 없이는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생활 부문에 IT를 도입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경제 성장, 외자 유치, 일자리 증가, 생활 수준 향상 등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각 가정에 최신 정보기술과 디지털 광역 통신, 인터넷을 도입하는 일은 오늘날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기술의 발전규모가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IT 발전과 전자정부제도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이 국내에 마련되었습니다. 즉 대통령 명령과 지시사항, 법률, 정부 명령, 국가통신위원회와 IT 분야의 다양한 측면을 규제하는 부서와 관청의 지시서 등이 채택되었는데, 특히 다음이 있습니다.

IT분야 법률:

「정보화법」, 「전자디지털서명법」, 「전자문서유통법」, 「전자지불법」 및 기타. 현재 전자정부법안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가정보통신 시스템 발전을 위한 복합적인 조치를 시행한 결과 국가통신위원회의 활동이 조직되기 시작한 것과 더불어, 정보시스템의 광범위한 도입, 양방향 서비스, IT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성 향상과 관련 있는 17개의 대통령 명령과 지시, 26개의 국무회의 명령이 채택되었습니다.

전자정부제도의 효율적인 도입 문제에 관한 기본문서들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가 정보통신 시스템의 지속발전방안에 관한 2013년 6월 27일자 대통령령 № PP-1989', '국가 통신위원회 산하 '전자정부개발센터'와 '정보보안센터'의 활동 조직에 관한 2013년 12월 31일자 국무회의명령 №PKM-355'.

앞서 언급한 법적 규정들은 '2013~2020년 우즈베키스탄 국가정보통신 시스템 종합 개발계획'에 따른 것이며, '우즈베키스탄 국가정보통신 시스템의 지속발전 방안에 관한 2013년 6월 27일자 대통령령 №PP-1989'에 근거한 것인데, 그 내용 가운데 전자정부 구축의 밑그림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5. 전자정부제도와 종합 개발 계획에 따른 여러 프로젝트 및 방안들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 국가 및 경제관리 기구와 지역 행정기관의 활동을 조율하고 적시 이행을 엄격하게 감독하는 일이 국무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국무회의 산하 국가위원회에 맡겨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전자정부제도의 도입과 개발과제 수행을 조율하고 양방향 정부서비스 제공의 지속적인 개선과 정부기관의 구조와 기능, 업무 절차의 최적화(BPR)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6. 전자정부제도의 도입과 효율적인 기능 수행 문제를 다룰 전권 기관은 **우즈베키스탄 ICT 위원회**입니다. 전자정부 제도 도입과 개발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ICT 위원회의 조직에 4개의 특별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전자정부 개발센터, 정보보안센터, UZINFOCOM 센터, UNICON.UZ 센터가 그것입니다. 2013년에 국가 지도자의 결정과 “국가통신위원회 산하 전자정부 개발센터와 정보보안센터의 활동 조직에 관한” 2013년 9월 16일자 국무회의 명령 № PKM-250에 근거하여 전자정부 개발센터와 정보보안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 1) **전자정부 개발센터**의 주요과제와 업무방향은, 전자정부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마련하고, 정부기관들에서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 정보 자원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국민과 기업 주체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 2) 전 세계적인 정보의 세계화 과정은 경제와 다른 생활 부문에 IT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성뿐 아니라 정보시스템의 보안여건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국제보안 시스템에 가입했습니다. ‘국가 정보통신시스템의 컴퓨터보안 추가 방안에 관한 2005년 9월 5일자 대통령 명령’에 의해 컴퓨터·정보기술 도입 및 개발센터 Uzinfocom 산하에 컴퓨터사고 대응청 UZ-CERT가 설립되었습니다. 바로 이 조직을 기초로 하여 우즈베키스탄 ICT위원회 산하 **정보보안센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센터의 기본 목표는 '전자정부' 제도의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원,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정보보안을 책임지고, 정보보안 위협요소를 규명하고 분석하며, '전자정부' 제도의 정보보안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 3) **과학기술 및 마케팅 연구센터 UNICON.UZ**는 통신과 정보화분야의 선도 조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 하고, 다음의 분야에서 표준 문서를 마련합니다: 통신, 정보보안, 전자디지털 서명, 전자문서유통 등. 전자정부 제도의 일환으로 UNICON.UZ 센터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부처 간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E-HUJJAT 도입, 데이터전송 네트워크 UzNet에 부처 간 보안 전자우편시스템 E-XA T 도입, 전자 디지털 서명키의 등록과 발급, 다양한 정보시스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은행 간 상업시스템, 전자지불 시스템 등)의 전자 디지털서명 생성과 검사방법 도입, 통신과 정보화 분야의 설계자료 검사 수행 등.

- 4) **컴퓨터·정보기술도입 및 개발센터 UZINFOCOM**은 단일 국영기업으로 ‘2002년 5월 30일자 대통령령 № UP-3080’에 의해 설립되었고, 경제, 행정, 사회 분야의 IT 도입과 컴퓨터화 국가개발계획의 전략적 우선순위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며 세계 정보화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전자정부 분야에서 UZINFOCOM 센터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전체 국가정보 자원의 기술적 지원, 국가 및 경제 관리기구의 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컨설팅 지원, 우즈베키스탄 정부 포털사이트 (GO V.UZ)와 양방향 정부서비스 통합 포털사이트(MY.GOV.UZ) 및 공공사업과 주택기금 포털사이트 (E-KOMMUNAL.UZ), 교육 포털사이트 Ziyonet (ZIYONET.UZ)의 기술지원, 정부기관 내 IT 도입과 개발에 따른 데이터수집과 데이터분석, 그리고 IT 개발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부처 간 자동 정보시스템 NIS.UZ 개발, ID.UZ에 등록되는 단일 계정을 통해 여러 웹사이트와 정보 시스템에 사용되는 단일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통신과 정보화분야 설계자료 검사수행 등. 그에 더하여 UZINFOCOM 센터를 위해서 국가 정보처리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지원을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5) ‘2013년 6월 27일자 대통령령 № PP-1989’을 이행하여, **전자정부 개발센터**는 전자정부 제도의 종합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28개 프로젝트와 방안들의 실행과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12개의 프로젝트는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인데 그 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6개의 프로젝트(2014년 3/4분기에 실행되기 시작)에 대한 조율이 센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자정부 개발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타 대통령령과 지시 사항, 정부 결정 사항, 정부 위원회 규정 등을 수행합니다.

- ① ‘양방향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 인터넷포털사이트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에 관한 2012년 12월 30일자 국무회의 명령 №378을 이행하여, 전자정부 개발센터는 UZINFOCOM 센터와 함께 2013년 6월 1일 **양방향 정부서비스의 단일 포털사이트**를 단일창구 원칙에 따라 MY.GOV.UZ 주소로 인터넷에 개설하였습니다. 이 포털은 2013년 2월 14일자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된 ‘복지와 번영의 해’ 국가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단일 포털을 통해 220개가 넘는 대국민 및 대기업 양방향 서비스를 21개 분야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일 포털사이트에는 600개 이상의 정부기관들과 그 하부 부서들이 등록되었습니다. 게다가 2014년 1월 25일부터 기업인들은 포털을 통해 청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직접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의 목표는, 다양한 신청서 검토기간의 근거 없는 지연, 대출이나 토지 분배절차의 위반, 잦은 단속이나 기타 불법적인 경제활동 개입, 기업 발전에 방해가 되는 주관적인 요인이나 관료주의와 같은 발생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단일 포털사이트를 통해 총 5만 2,000건 이상의 청구서가 제출되었는데, 작년에는 이 수치가 1,000건이었습니다. 2014년 9월부터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기업 주체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9월 초부터 거의 4,000건의 전자서비스 신청서가 기업 측으로부터 접수되었는데 이것은 이전 월의 기록을 8배 가까이 상회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양방향 정부서비스 단일 포털사이트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텔레콤이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용 온라인 카드를 사용하여 온라인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ICT 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및 기타 부처들과 연계하여 정부 관세와 기타 세금을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5만 7,500명 이상의 일반 은행고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모바일뱅킹의 이용자 수는 36만 3,000명을 넘습니다. 통신사, 인터넷 제공업자, 전화, 케이블방송, 공공서비스, 유통판매업, 택시 등의 서비스에 대해 개인이 결제할 수 있게 해 주는 'CLICK', 'MBank', 'SMS-TO'LOV' 같은 모바일뱅킹 시스템이 온라인카드 소지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② '실물 경제에 정보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2014년 4월 3일자 대통령령 No. PP-2158'을 이행하기 위해, 센터는 총액 3억 3600만 슝(약 1억 6,000만 USD) 규모의 실물 경제 37개 기업의 우선적인 프로젝트 86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실물 경제 분야에 IT와 소프트웨어의 광범위한 도입 및 신속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리효율 개선과 생산비용 감소, 경제 조직과 대기업들의 금융경제 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 보장 및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 ③ '우즈베키스탄 투자 및 사업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추가방안에 관한 2014년 4월 7일자 대통령령 No. UP-4609'과 '기업활동 및 정부서비스 제공관련 절차의 지속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2014년 4월 15일자 대통령령 No. PP-2164'를 이행하여, 센터는 정부부처, 위원회, 조직과 함께 양방향 정부 서비스 단일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기업주체를 위한 양방향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면허 및 허가서 발행의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하고 기업에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 ④ 2013년 12월 31일자 국무회의 명령 No. PKM-355를 이행하여 센터는 국가 및 경제 관리기구의 120개 이상의 전문 하부부서들과 지역 행정기관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원 도입의 효율성 연구 및 정보통신기술 도입 효율성 등급 평가시스템 도입이 포함됩니다.

국가 및 경제관리 기구와 지역행정기관의 IT발전 등급 평가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의 기본수요 대비 정부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와 전자서비스의 일치정도 50%,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원 26%, 정보보안 20%, 조직성평가 4%.

- IT분야와 전자정부제도에 대한 인력 양성과 전문성 향상 내용으로는 다음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 전체 공무원의 컴퓨터 숙련도와 지식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시스템 도입
 - 정부인력 대상전자정부 분야 교육이 진행되는 전자정부 학술센터 설립. 전자정부학술센터에서 국가 및 경제 관리 기구와 지역 행정기관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 2,000명 이상이 교육을 수료.

- 컴퓨터 분야의 국민 교육을 위한 지역 학술 센터 설립 완료
- 공학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우수 전문가를 양성하는 아시아 최고대학 중 하나인 한국 인하대학교 분교가 타슈켄트에서 개교함.
- 타슈켄트 정보기술 대학교와 그 분교는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정부시스템 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부로부터 혜택과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모든 종류의 세금과 의무 공제금, 관세를 2017년 1월까지 면제 받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출 규모가 50% 이상 성장하는 경우 위 혜택은 2년 더 연장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국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수는 성장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285개에 달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시장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의 규모는 올해 4,200만 USD에 달했는데, 이것은 작년 동 기간에 비해 3배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 자원하는 학생들의 공동노력을 통해 타슈켄트 정보기술대학교 산하에 시민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교육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의 정부 부처와 사회단체에 의해서 정보통신기술과 교육서비스, 청소년의 종교 도덕 교육을 위한 활동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들어지는 교육과 청소년분야의 정보자원을 국내 전체 교육기관이 등록되어 있는 단일정보네트워크 "ZiyoNET"으로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교육 포털사이트 'ZiyoNET'은 7만 3,000개 이상의 교육자원과 1만 7,000개 이상의 교육영상자료 및 1만 5,000개 이상의 교육관련 사이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교육 국가네트워크에는 160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등록되어 있어서, 국내 학생들과 청소년을 위한 원격 교육과 기타 정보통신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전자정부 분야 그리고 전자교육, 전자보건, 전자과세, 전자관세 등과 같이 다양한 경제사회 부문에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분야에서 인력 양성과 전문성 향상, 공동 학술연구, 학술회의, 세미나 진행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7.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제도 도입과정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확고한 법적 기반을 앞으로 구축하는 일 즉 이 분야의 법적 관계를 규제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법적 규정들을 마련하고 승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정부 업무에 관한 법률

개인과 법인에게 양방향 정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부업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법제에는 정부 업무시스템과 지방 및 중앙행정기관 직원의 지위에 관한 특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무원에 관한 법적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방 및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의 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는 「우즈베키스탄 헌법」과 「지방행정부에 관한 법」, 「시민자치기관에 관한 법」, 「우즈베키스탄 국무회의에 관한 법」과,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입니다. 공무원의 지위,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특정 요구사항과 보장내용, 혜택 등을 명시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이 권장됩니다.

2) 개인 정보 보호법

현재 거의 모든 정보가 생성과 동시에 곧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개와 배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의 보호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부문에서 기초적인 법적 규정으로는 「정보 자유의 원칙과 보장에 관한 법」을 들 수 있으며, 거기에는 ‘정보’, ‘정보분야’, ‘기밀 정보’, ‘정보보안’, ‘정보보호’ 등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법률에는 현재 ‘개인정보’ 개념의 정의가 없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 유일한 법적 출처는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법입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정보의 안전성, 기밀유지 및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법적·조직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명시하는 법적 규정 마련이 권장됩니다. 이 법적 규정에서는 어떤 원칙들을 기초로 개인 정보의 수집, 처리, 보호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의 변경 및 보완 절차가 규정되어야 합니다.

3) 공공데이터법

전자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 및 경제관리 기구와 지역행정기관의 활동에 관한 정보 공개성이 향상 되고, 정보 접근성과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직접적인 참여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현행법에는 정부기관 활동의 공개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법적 규정들이 있습니다. 「국가행정 및 관리기관 활동의 공개성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법률」과 ‘우즈베키스탄 내 정보통신기술 발전 현황 평가 시스템 도입 방안에 관한 2013년 12월 31일자 우즈베키스탄 국무회의 명령’ № 355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두 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전자정부 개발센터는 공공데이터 정부 포털사이트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법조문 초안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정부 포털사이트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상의 국가 정보자원”이며, “공공데이터란 자유롭게 무료로 여러번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이며) 사람이 미리 변화시키지 않는 자동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조직되어 있는 체계화된 데이터 형태로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정보”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승인하는 것의 기본 목표와 그 필요성은 모든 행정기관과 관리 기구를 위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단일한 정의와 ‘기계판독 가능형태’에 대한 단일한 정의를 내림으로, 모든 수준에서 기계판독 가능형태에 대한 단일한 요구사항들을 규정하고, 모든 정부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공공데이터를 인터넷에 올리는 단일한 절차를 만들고, 지적 소유권에 관한 법에 의해 규정된 공개정보 이용제한 규정을 없애는 경우 모든 행정기관들과 관리 기관들에게 적용되는 단일한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공개에 기본적인 목표는 국가 및 경제 관리기구와 지역행정기관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 및 경제 관리기구와 지역 행정기관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공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만들 때, 그리고 경제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보시스템과 인터넷서비스에서도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공공데이터 정부포털”에 관한 법안은 포털이 공공데이터 보존을 위한 단일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공공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하며 공공데이터 제공자들과 사용자 간에 공공데이터의 유용성과 이용자 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정부기관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기업 주체들에게 포털에 올라온 정보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사업상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행법에는 현재 공공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규정이나 표준 문서가 없습니다. 외국 국가들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전자정부 개발에서 정부 관리 및 행정기관 들에 의한 정부의 공공데이터보장 역할은 매우 큼니다. 따라서 러시아 연방에서도 「국가기관과 지역 자치기관의 활동에 관한 정보접근성 보장법」을 채택하였으며, 정부기관과 지역자치기관에 의한 공공데이터 발행에 관한 방법을 공시하고, 공공데이터 발행의 기술적 요구사항들도 ‘열린정부 활동조정 정부위원회’의 2014년 5월 29일자 회의록 №4을 통해 승인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공공데이터 정부 포털이 있으며, 이 포털의 법적 근거는 “카자흐스탄 정보화-2020” 국가 계획에 관한 2013년 1월 8일자 대통령령 №464와 “국가 계획 목록 승인에 관한” 2010년 3월 18일자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의 수정 내용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보화-2020” 국가계획에서는 공공 데이터와 같은 개념뿐 아니라 공공데이터 플랫폼에 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정부서비스 개념의 법적 정의와 행정절차에 관한 법적규정의 부재

현재 현행법에는 ‘정부서비스’ 개념의 법적정의를 없지만 UNICON 센터는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전자정부법」 초안을 만들었으며, 거기에서는 이 개념이 “정부서비스란 정부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활동이며, 신청자의 문익에 의해서 혹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통보 절차에 따라 정해진 권한의 한계 내에서 신청인의 권리와 자유와 법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된다”라고 정의됩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정부서비스법」이 채택되었고, 러시아 연방에는 「정부 및 자치정부 서비스 제공 조직에 관한 연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을 채택하는 것의 장점은 ‘정부서비스’ 개념의 정의를 포함하여, 정부기관들의 대국민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정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청서를 내거나 국가기관에 청구할 때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실현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행정절차법」의 채택이 시급합니다. ‘행정절차’ 개념은 ‘정부서비스’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는 정부기관들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법적으로 확립된 절차라면, 정부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들(우즈베키스탄 UNDP)은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절차를 규정하게 될, 행정절차법안의 입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마련하는 실무팀(UNDP, 전자정부센터, 법무부, 중앙은행)의 말에 따르면 이 법안의 채택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정부기관의 책임감을 고취시켜 줄 것입니다.

5)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의 부재

‘양방향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인터넷 정부포털사이트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에 관한 2012년 12월 30일자 국무회의 명령 № 378’에 의하면, 단일 포털사이트는 유료기반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양방향 정부서비스의 단일 접근통로입니다. 그러나 이 법적 규정에서 ‘전자정부서비스 규정’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표준(서비스 제공 규정)은 정부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하는 법적 규정이며, 또한 정부서비스 제공의 과정, 형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규정(표준)의 승인은 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6) 전자정부 시스템 내 단일 신분 확인 시스템

현재 전자정부 개발센터는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단일 신원확인 시스템에 관한 법조문의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초안에서는 ‘단일 신원확인 시스템’ 개념이 ‘신청자와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양방향 정부서비스 단일 포털 및 전자정부 시스템의 기타 정보시스템들로 접근하는 것을 승인하는 인프라 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법적 규정들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도입이 정보교류 참여자들의 행정적 정보 접근절차의 정의와 정보 보호보장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대부분 단일 신원확인시스템의 개발과 업데이트 및 단일 신원확인시스템의 기능 보장에 달려 있습니다.

8.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기술과 전자정부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와 방안들이 전반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여건의 마련, 국가 및 경제 관리기구 활동의 투명성 제고, 이를 통한 기업 활동환경의 본질적인 개선, 그리고 핵심 실물경제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V 제2세션

1. 개 요

- 주제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 시간 : 16:30~17:50(80')
- 장소 : 본회의장(에메랄드홀)
- 사회 : 이강섭 국장(법제처)
- 발제 및 토론자

발 제	•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 • Miras Daulenov 국제법학장(카자흐인문법률대학교)
지정토론	• 손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박세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 이금우 차장(SK C&C) • Zhanna Abdilmanova 수석전문관(카자흐스탄 법무부)

2.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가. 주제 발표

주제발표 1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

I. 서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는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쇼핑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데, 이는 편리한 고속 인터넷, 좁은 국토와 도시화, 판매자의 치열한 가격 경쟁, 국가적 지원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임.

II. 전자상거래 법제의 변화

1.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으며,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규율을 목적으로 하여 최초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법률임. 2012년에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주소 제도를 도입하는 일부 개정을 하면서 법률 명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고 이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2002년 제정.

3.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은 1999년 제정되었으며,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에 관한 규정들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함. 전자거래에서 수반되는 당사자의 인증은 이 전자서명 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대금 결제 역시 공인인증서에 의존.

III. 전자거래를 위한 제도적 지원

1. 진흥전담기관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2. 공인전자문서센터

타인의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기간에는 전자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보관 등에 관하여 전문성 있는 자를 지정하도록 함.

3. 공인전자주소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송수신된 전자문서의 ‘유통정보’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보관·관리되며 유통증명서 발급정보로 활용됨. 이를 통해 기존의 전자우편에서 보장되지 않았던 본인확인과 부인방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전자거래에서의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함.

4.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공인전자주소 등록을 대행하고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임. 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공인전자주소 서비스를 지원하므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송수신되는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됨.

IV.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의 발전

1. 청약철회권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신중한 구매 검토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 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청약철회하여 구매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임.

2. 분쟁조정

민사소송의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인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더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음.

3. 오픈마켓의 소비자 보호

1) 오픈마켓의 의미

통신판매자들이 재화를 자신의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게 하고 소비자를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거래에서 백화점과 같이 각각의 판매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되 그 오픈마켓이 하나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

2) 오픈마켓의 청약철회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매우 손쉽게 청약철회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함.

4. 소셜커머스의 소비자 보호

1) 소셜커머스의 의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동구매의 구매자 범위를 사회 전범위로 넓혀 소비자의 구매력을 강화시켜 판매 가격을 50%정도로 낮춰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2) 소셜커머스의 청약철회권

소셜커머스업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의해 청약철회권이 소비자에게 인정됨. 소셜커머스의 청약철회권 상대방은 소셜커머스업자인데 반하여 재화의 반환은 실제로 재화를 배송한 상품제공자를 상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8조 2항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

5. 앱스토어의 소비자 보호

1) 앱스토어의 의미

앱스토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으로서, 수많은 개발자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전형적인 오픈마켓과 유사함.

2) 앱스토어의 소비자보호책임

앱스토어는 개발자와 이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최종사용계약에 깊이 관여하여 이용자의 계정설정을 앱스토어에 하고 또 설치를 위해서는 앱스토어의 암호를 입력하여야 하는 한편 대금을 수취한 후 그것을 개발자와 배분하는 등 유체물을 주된 거래대상으로 하는 오픈마켓의 역할이나 기능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0조의2의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V.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의 과제

1. 디지털환경에 따른 청약철회권 문제

소비자가 디지털상품을 복제한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한다면 소비자로서는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 되므로, 디지털상품의 청약철회권의 허용은 다른 유형의 물건과 달리 다루어져야 정의관념에 부합할 것임.

2. 새로운 전자상거래 기법의 등장

앞서 살펴본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앱스토어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새로운 전자상거래 기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새로운 전자상거래기법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전통적인 청약철회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주제발표 2 Miras Daulenov 국제법학장(카자흐인문법률대학교)

1.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미화 4억 5천~ 6억 달러규모임. 약 500개의 온라인 상점과 포털 사이트가 있으며, 약 천만 개의 지불카드가 발급되었는데, 그 중 800만개 이상은 온라인 결제가 어려움.
2. 현재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은 「전자 서류와 전자 서명에 관한 법률」(2003. 1. 7.),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규제 허용 규정」(2007. 9. 10.), 「인터넷 거래에 관한 규제 허용규정」(2005. 4. 21) 등이 있음.
3. 소비자 보호법률: 현재 상황
 - 1997.12.27. 「민법」 제정
 - 1999. 7. 1. 민법특별 부분 제정
 - 2004. 4.12. 「거래 활동에 대한 규제법」 제정
 - 2010. 5. 4. 「소비자 권리에 대한 보호법」 제정
 - 2003. 1. 7. 「전자 문서 및 전자 서명법」 제정
 - 2007. 9.10. 카자흐스탄공화국 전자상거래를 위한 원칙 승인 의안
 - 2005. 4. 21. 국제 교역 원칙 승인에 관한 결의안
4. 소비자 권리에 대한 보호법

1991. 6. 5. 카자흐 사회주의 공화국의 「소비자 권리에 대한 보호 법률」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2010. 5. 4.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소비자 권리에 대한 보호법」이 제정됨

 - 1) 법률의 강점
 - “소비자 권리의 모든 직·간접적 제한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소비자는 식료품 이외에 구매한 물건이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한 질적 수준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교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규정함.
 - 2) 법률의 약점
 - 카자흐 사회주의 공화국일 당시에 만들어져 시장 경제의 모든 원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음.
 - 전자 거래에 관한 소비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5.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이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상품의 판매나 웹 페이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공개 청약으로 인정
 - 〈원거리 계약〉과 〈off-premises계약〉의 정의 규정을 둠.
 - 소비자는 인터넷 상에서 구매한 물건을 구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돌려보낼 권리가 있음을 명기함.
 - 소비자는 계약 철회에 대한 결정을 거래자에게 알린 후 14일 이전에 물품을 다시 반송해야 함을 규정.
 - 소비자는 철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를 요청했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만약 소비자가 철회한다면, 거래자는 그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규정.

나. 토론

토론 1 손헌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전자상거래와 관한 중요한 논의 중 하나가 국제 전자상거래에서의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의 구축임. 최근 EU, 미국 등에서는 국경을 넘은 격지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을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온라인 분쟁해결 제도(Online Dispute Resolution; ODR)을 고려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은 2010년부터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온라인 분쟁 해결 절차규칙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음. EU의 경우도 EU 소비자 ODR 규정, EU 소비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지침을 제정하여 EU 공통의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작구 등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의 마련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음. 방법의 하나로 UNCITRAL ODR 절차 규칙을 기초로 하여 우선적으로 아시아 지역을 연계한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토론 2 박세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 및 사업자의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2002년 제정한 법률로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10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음.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기사이트 등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신설
소비자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사기사이트, 위조상품 판매 사이트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제재 결정이 있기 전에 영업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로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

- ①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의 접수 받는 업무를 하는 경우 청약이 제대로 접수되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을 고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 ②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대금결제 업무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대금결제 실수를 확인·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도 함께 부여함.

-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제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디지털 콘텐츠의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하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도록 청약철회 제도를 정비함.

토론 3 이금우 차장(SK C&C)

-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유사하게 정부의 ICT 발전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바탕으로 인터넷 접근성 수준과 휴대폰 가입자 수, 그리고 IT 관련 기업 활동이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는 주로 항공, 철도 등 티켓 구매 비중이 높고, 앞서 Dr. Miras Daulenov가 말씀주셨던 초코라이프미(Chocolife.me), 블리자드(Blizzard)등 소셜커머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최근의 카자흐스탄 정부의 모바일 전자정부 및 모바일 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향후 m-Commerce 및 Social-Commerce 등과 같이 모바일 부분의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대됨.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저비용 고품질의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간편하지만 완벽한 보안이 보장된 전자결제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함.
-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약 철회 및 분쟁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편안하고 안심하면서 거래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

토론 4

Zhanna Abdilmanova 수석전문관(카자흐스탄 법무부)

- 카자흐스탄에서는 전자상거래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는데, 지난 수년간 전자상거래가 집약적으로 발전하여 이 분야 입법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지금은 전자상거래가 입법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음.
-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및 판매자의 권리,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공공 단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 권리 침해를 시정하는 명확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당국은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이 초안에서는 소비자 권리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 기구의 권한이 상세히 규정되며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보호도 규정할 예정임.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선 방안
 - 미국과 같이 여러 국가에서 세금 감면이 시행되고 있음. 세금 감면은 전자상거래의 양적 성장, 기타 인접국과의 경쟁력 향상 등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재정부는 카자흐스탄의 부가가치세율이 크게 낮다는 이유로 이에 부정적임.
 -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기관에 대한 전자송장은 회계적 필요로 인해 도입되었는데 업무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3. 현장 사진



4. 주제발표문 및 토론문

주제발표 1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 병 철

2013년 한국 전자상거래 현황

통계청 자료

거래주체별	액수(원)
기업간(B2B)	1,095.7조
기업/정부간(B2G)	70.6조
기업/소비자간(B2C)	24.3조
소비자간(C2C)	13.4조
합계	1,204조



YONSEI UNIVERSITY

Copyright OH, Byoung-cheol

2

전자상거래 성장배경



 YONSEI UNIVERSITY

Copyright OH, Byoung-cheol

3

전자상거래 법제의 변화

전자거래기본법

- 1999년 제정 (UNCITRAL Model Law의 영향)
- 2005년 전자문서 보관 제도 도입
- 2012년 공인전자주소 제도 도입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2002년 제정
- 지속적인 개정으로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현실에 적응

전자서명법

- 1999년 제정

 YONSEI UNIVERSITY

Copyright OH, Byoung-cheol

4

전자상거래의 제도적 지원

전자거래 진흥전담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설립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인전자문서센터

-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보장
- 전자문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Trust Third Party)

공인전자주소

- 종이문서의 내용증명에 준하는 '#메일' 서비스 제공
-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제공

공인전자주소(#메일) 운영



청약철회권(Cooling Off Right)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17조
 -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법정해제권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 이행이 그보다 늦으면, 공급일로부터 7일
- 판매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경우
 -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청약철회권 행사 제한
 - 소비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경우
 - 소비자가 사용 또는 소비로 현저한 가치 감소
 - 복제가능한 재화의 포장 훼손 등

오픈마켓의 소비자보호

- 독특한 BtoC 중심의 Market-place
 - 미국 ebay와 달리 소규모 BtoC 거래의 장
- 오픈마켓의 청약철회권
 - 원칙적으로는 청약철회권의 주체
 - 사전에 소비자에 대해 통지하면 면제 가능
 - 실거래에서는 청약철회권 보장
- 관련 대법원 판례
 - 싼 상품으로 유인하고 본 상품은 증액되는 경우도 소비자보호법상 허위광고
 - 오픈마켓은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에 책임없음

대법원 2012.6.28. 2010두24371

■ 사실관계

- 오픈마켓의 치열한 가격경쟁
- 하나의 화면에서 수개의 물품 판매
- 실내화 7,900원으로 소비자 유인
- 리복 실내화는 광고 대로 7,900원에 판매
- 나이키를 선택하면 13,900원 추가 지불

■ 대법원 판결

- 소비자보호법 제21조 1항 1호의 허위광고

대법원 2012.12.4. 2010마817

■ 사실관계

-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
- 통신판매자 판매상품이 상표권 침해
- 통신판매중재자는 상표권 침해 여부 파악불가
- 하급심 판례는 통신판매중재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에 대해 상반된 판결

■ 대법원 판결

- 통신판매자의 상표권 침해 거래 그 자체만으로는 통신판매중재자는 책임 없음

오픈마켓의 소비자보호

- **독특한 BtoC 중심의 Market-place**
 - 미국 ebay와 달리 소규모 BtoC 거래의 장
- **오픈마켓의 청약철회권**
 - 원칙적으로는 청약철회권의 주체
 - 사전에 소비자에 대해 통지하면 면제 가능
 - 실거래에서는 청약철회권 보장
- **관련 대법원 판례**
 - 싼 상품으로 유인하고 본 상품은 증액되는 경우
우도 소비자보호법상 허위광고
 - 오픈마켓은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에 책임없음

소셜커머스의 소비자보호

- **SNS를 활용한 새로운 전자상거래 기법**
 - 공동구매형식으로 판매가격 대폭 인하
 - 2014년 약 3조원의 거래규모로 팽창
- **소셜커머스는 통신판매자인가 중개자인가**
 -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자
 - 기능상 통신판매자로 보아 청약철회권 인정
- **청약철회권 행사**
 -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청약철회권 보장
 - 미사용 쿠폰에 대해서도 일부 반환 허용

앱스토어의 소비자보호

- **디지털재화의 전자상거래 Market-place**
 - 디지털 재화의 통신판매중개자
-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유형**
 - 기존의 오픈마켓보다 깊은 거래 관여
-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
 -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열람 방법 제공
 - 청약철회권 원칙적으로 인정
 - 디지털재화의 청약철회권의 실효성 의문
 - 거래현실에서 해외 앱스토어는 치외법권 지역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의 과제

- **디지털환경에 따른 청약철회권**
 - 디지털재화에 청약철회권이 가능한가?
 - 포장을 훼손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SW?
 - 다운로드 받은 디지털재화는 어떻게 반환?
 -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 **새로운 전자상거래 기법의 등장**
 - 소셜커머스나 앱스토어에 대한 논란
 -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에서의 전자상거래
 - 해외 전자상거래 구매대행의 청약철회권

주제발표 2 Miras Daulenov 국제법학장(카자흐인문법률대학교)

Kazakh Humanities and Law University



Electronic commerce and consumer protection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Dr Miras Daulenov
Chair of International Law
m.daulen@yahoo.com

Astana, 2014

Introduction: general information about Kazakhstan



The Republic of Kazakhstan gained independence on December 16, 1991. Its territory is as large as 2 million 724,9 thousand square kilometers and accordingly it occupies the ninth place in the world by its size. The population of Kazakhstan as of June 1, 2012 was 16 million 760 thousand people.

From the moment of gaining independence, GDP of Kazakhstan per capita has increased by 16 times - from 700 to 12 000 US dollars.

Kazakhstan attracted 150 billion US dollars of foreign investments that make up about 70 % of the total amount of all investments attracted to the Central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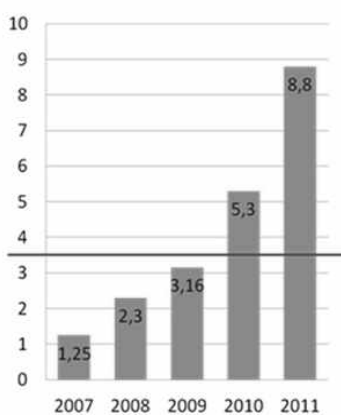
Introduction: general information about electronic commerce in Kazakhs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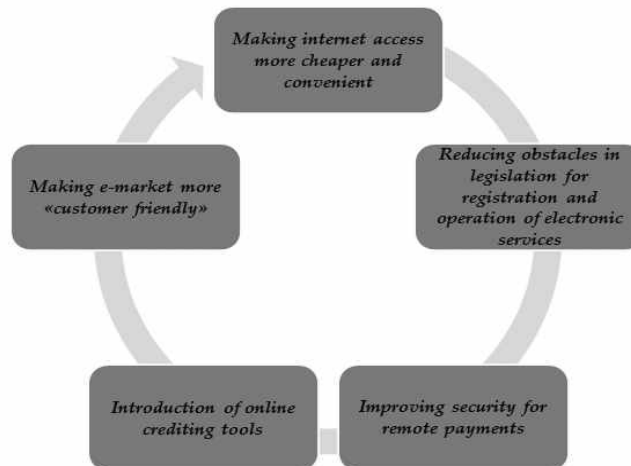
According to the estimation of experts the volume of the e-commerce market in Kazakhstan equal 450-600 million US dollars. There are about 500 online stores and portals in Kazakhstan which provide electronic services such as Air Astana, Chocolife.me, Blizzard, BeSmart, MyPay, e-government. About 10 million payment cards were released, of which more than 8 million cards are closed for the online transaction (source: Forbes Kazakhstan).

Introduction: general information about electronic commerce in Kazakhstan

Diagram Showing Increase in Number of Internet Users in Kazakhstan (source: http://processing.kz/en/services/for_banks/116)



Tasks for increasing electronic commerce in Kazakhstan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current situation

In 2003, January 7 the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Electronic Document and Digital Signature» was adopted.

In addi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dopted regulation of «On Approval of the Rules for e-commerce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September 10, 2007 № 786).

Moreov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dopted regulation of «On Approval of the Rules of Internal Trade» (April 21, 2005 № 371).

*The law of consumer protection: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In 1991, June 5 the law of the Kazakh Soviet Socialist Republic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was adopted and it became null and void under the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f May 4, 2010.

The weaknesses of the law:

- 1.the law was adopted during the Kazakh SSR and it didn't take into account all the features of the principle of the market economy;*
- 2. the law didn't provide the possibility of electronic purchases of goods and consumer protection in this case: «Retail sales agreements executed during its conclusion must be concluded orally regardless of the value of the goods. Retail sales agreements executed not during its conclusion (in pre-order, parcel trade, in the sale of passenger cars and in other cases) shall be concluded in writing.» (p.4 art.8).*

*The law of consumer protection: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he law of the Kazakh Soviet Socialist Republic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

The strengths of the law:

- 1.the law provid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ny direct or indirect restrictions of consumers' rights is not permitted" (p.1 art.9);*
- 2.the law stipulated that: "the consumer is entitled to exchange the purchased good quality non-food good, if for some reasons it either does not meet the consumer's need or does not possess the necessary quality. The obligatory condition for the exchange of the goods is a maintenance of its market condition, consumer characteristics, seals or labels, sales receipt or other documents issued by the seller to the consumer with the sold goods." (art. 10).*

The law of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current situation

1. *The Civil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dated December 27, 1994.*
2. *The Civil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Special Part) dated July 1, 1999.*
3. *The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regulation of trading activities» dated April 12, 2004.*
4. *The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dated May 4, 2010.*
5. *The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Electronic Document and Digital Signature» dated January 7, 2003.*
6. *Regul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Approval of the Rules for e-commerce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dated September 10, 2007 № 786.*
7. *Regul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Approval of the Rules of Internal Trade» dated April 21, 2005 № 371.*

*The law of consumer protection:
current situation*

1. *The Civil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dated December 27, 1994 provides that:*
«Parties may conclude agreements both as provided for and as not provided for by legislation» (p. 2 art. 380).
2. *The Civil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Special Part) dated July 1, 1999 provides that:*
« 1. Exhibition of goods, demonstration of their samples or giving information about the sold goods (descriptions, catalogs, photos, etc.) at the place of sale is a public offer, regardless of whether the price and other terms of the contract of sale are specified, except in the case where the seller is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 goods are not intended for sale.
2. *The offer of goods specified in advertising, catalogs and other descriptions of the goods, which is addressed to the general public in the inappropriate place for the sale of goods and if it does not contain the essential terms of the contract of sale, shall not be recognized as a public offer.*» (art. 447).

*The law of consumer protection:
current situation*

2. The Civil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Special Part) dated July 1, 1999 provides that:
«The buyer is entitled, within fourteen days from the date of transfer of non-food goods, unless a longer period is not declared by the seller, to exchange the purchased goods on a similar product of a different size, shape,, color, configuration and so on at the place of purchase or other places that are declared by the seller, if there are difference in price, the seller need to be recalculated» (p. 1 art. 454).

*The law of consumer protection:
current situation*

3. The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regulation of trading activities» dated April 12, 2004 provides that:
« 1. E-commerce shall be carried out through concluding commercial transactions on the basis of an agreement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to the electronic trade for the sale of goods using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2. The rights and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rticipants of e-commerce shall be protected in a manner stipulated for the subjects of trading activities.
3. The procedure for carrying out e-commerce shall be determined by rules approv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rt. 29).

*The law of consumer protection:
current situation*

**4. The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dated May 4, 2010
provides that:**

«The consumers are entitled:

- 1)to make contracts for the purchase of goods
(performance of work and services);**
- 2)to have an access to the information in the field of
consumer protection;**
- 3)to get the information about goods (works,
services) as well as about the seller (manufacturer,
performer);**
- 4)to purchase safe products (works, services);**
- 5)free choice of goods (works, services);**
- 6)proper quality of the goods (works, services);**

*The law of consumer protection:
current situation*

**4. The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dated May 4, 2010
provides that:**

- 7)exchange or returns of proper and improper
quality goods;**
- 8) full compensation for damages (harm) caused to
life, health and (or) property due to defects in the goods
(works, services);**
- 9)to receive from the seller (manufacturer,
performer) a document confirming the purchase of
goods (works, services)» (art.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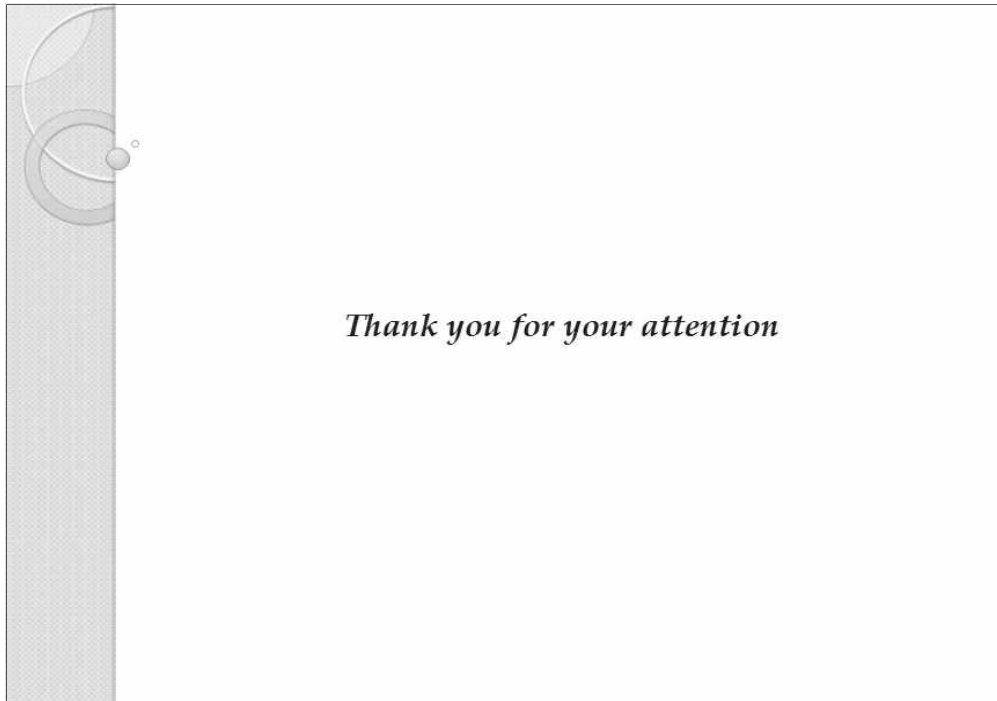
Tasks for improving consumer protection law in electronic commer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dopt the law on amendments to the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consumers in the field of e-commerce, which would stipulate the following provisions:

- 1. publication of information about the sale of goods or services on the web page is recognized as a public offer;*
- 2. to give definition to «distance contract» and «off-premises contract»;*
- 3. the consumer has the right to exchange the purchased goods on the internet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goods by sending them to the seller in the same way as the goods were received (for example, by mail);*

Tasks for improving consumer protection law in electronic commerce

- 4. the consumer should be required to send back the goods not later than 14 days after having informed the trader about hi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contract;*
- 5. on the one hand, the consumer should benefit from his right of withdrawal even in case he has asked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before the end of the withdrawal period. On the other hand, if the consumer exercises his right of withdrawal, the trader should be assured to be adequately paid for the service he has provided.*



토론 1 손헌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이번 세션의 발표를 통하여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제를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자상거래가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이를 활성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소비자기본법」 등에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전자상거래 시행규칙(Правила осуществления электронной торговли)」,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е и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소비자보호법(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등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병철 교수님의 발표문에서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법제 개선과 관련하여 참고해볼 수 있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법제 및 제도적 지원 현황, 전자상거래 유형별로 청약철회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쟁점 사항 등이 체계적으로 잘 소개되고 있어, 저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논의 중 하나가 국제 전자상거래에서의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의 구축입니다. 최근 EU, 미국 등에서는 국제 전자상거래가 정체되어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국경을 넘는 격지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을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시스템이 국내 전자상거래에 비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온라인 분쟁해결 제도(ODR, Online Dispute Resolution)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은 2010년부터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에서 국제 B2B, B2C, 소액, 대량(High-Volume, Law-Value)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규칙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EU의 경우도 EU 소비자 ODR 규정, EU 소비자 ADR 지침을 제정하여 EU 공통의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내 전자상거래 분쟁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소송외의 방법으로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써 합의 권고, 조정 등의 ADR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직구 등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의 마련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방법의 하나로 UNCITRAL ODR 절차 규칙을 기초로 하여 우선적으로 아시아 지역을 연계한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간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UNCITRAL의 경우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 상거래와 관련한 규범 모델 논의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오늘과 같은 아시아 국가간의 법제 교류가 보다 활성화된다면, 아시아 국가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 규범 모델을 공동으로 성안하고 전파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 적합한 공동 입법 모델 제정 논의도 함께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ALES의 많은 발전을 기대하며, 좋은 발표와 토론 감사합니다.

토론 2 박세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형성과 「전자상거래법」의 역할

1. 전자상거래 시장에 관한 개관

1990년대 이후 컴퓨터 보급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사용이 일상화되는 등 시장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어 전자상거래의 발전도 가속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매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으며, 전통적인 오프라인 거래보다 유통 효율성이 뛰어나 동일한 상품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장점에 힘입어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데, 2009년 약 20.6조원, 2011년 약 29조원에 이어 2013년에는 약 38.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시장규모 약 45.2조원의 대형마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소매 유통채널로서 전자상거래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평균 15%이상의 높은 성장속도를 감안할 때 전자상거래는 조만간 가장 영향력 있는 소매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시장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사업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2010년 약 25.8만명, 2011년 약 30만명, 2012년 약 32.4만명, 2013년 36.1만명에 이르고 있다.

2. 「전자상거래법」의 주요내용 및 사례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 및 사업자의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2002년 제정한 법률로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10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크게 소비자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철회권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과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 및 이에 대한 제재 규정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는 재화를 받은 날과 계약서면을 받은 날을 비교하여 더 뒤에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이 이러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소비자가 재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전자상거래의 경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재화에 대한 구매 재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화가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른 경우 등에는 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있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인정한다면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및 사업자와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등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된 재화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율리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한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핵심적인 사항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013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① 온라인여행사들이 항공사 고시금액보다 유류할증료 등을 부풀려 받은 사건

주요 9개 온라인 여행사들이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항공사들이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하고,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와 항공 TAX 금액이 소비자들에게 받은 금액보다 적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그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는 등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② 의류전문쇼핑몰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 및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 사건

일부 의류전문몰 업체들은 직원들을 통하여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거나 업체에 불리한 구매후기를 삭제하는 등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하였다. 또한 화이트 색상, 세일 상품 등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함에도 상품 수령 후 2~3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해야만 하는 것으로 안내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회를 임의로 박탈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9월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3. 최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논의

그간 10차례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전자상거래법의 내용 일부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성 사이트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오픈마켓(옥션, 11번가, G마켓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요 주체들의 책임을 강화하며, 유형재화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콘텐츠와 같은 무형재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기사이트 등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신설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상 대금만 편취하고 재화를 배송하지 않는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높고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제도(제32조 제4항)는 증거자료 확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소비자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사기사이트, 위조상품 판매 사이트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제재 결정이 있기 전에 사이트의 영업 활동 일부 혹은 전부를 임시로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다만 임시중지명령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엄격한 명령 발동 요건을 함께 정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①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제21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② 이로 인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③ 손해가 다수에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

최근 들어 오픈마켓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역할 및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는 이러한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신뢰하여 거래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청약접수, 대금결제 등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의 거래 과정에서 중요한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상당 부분 개입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 강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 받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청약이 제대로 접수되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대금 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금결제 실수를 확인·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의무는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제한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도는 전통적인 유형 재화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무형 재화인 디지털콘텐츠(음원, 영상 등)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사용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소진되지 않고 그 가치도 감소하지 않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없이 인정하게 되면 콘텐츠 개발자의 개발 비용 보전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개발 유인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디지털콘텐츠의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하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 되도록 청약철회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재화의 성격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제도를 정비하게 되면 사업자와 소비자간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 3 이금우 차장(SK C&C)

카자흐스탄 ICT 현황 및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개선 기회

1. 카자흐스탄 ICT 인프라 및 이용자 현황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유사하게 정부 주도의 ICT 발전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바탕으로 인터넷 접근성과 휴대폰 가입자, 그리고 IT 관련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이는 본인이 2006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정보통신분야 기업 활동을 시작하며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임

■ ICT 인프라 현황

- 정보통신 분야도 예외는 아니며, 이는 UN의 경제사회처(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에서 전 세계 193개국을 조사, 발표한 UN e-Government Survey 2014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함
- 우선 온라인서비스 수준과 ICT인프라 현황정보, 인적자본지수 등을 통합한 전자정부 수준은 2012년 38위에서 2014년 28위로 10단계 급상승했으며, 스위스, 말레이시아, 터키, 러시아 등과 같이 High 레벨 그룹에 속하고,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상위 수준에 도달해 있음
- 특히 정보통신인프라 지수(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dex)로 카자흐스탄의 기초 ICT인프라를 살펴보면,
 - 인구 100명당 기준 인터넷이용자수 - 53.32
 - 인구 100명당 기준 이동전화가입건수 - 176.58
 - 인구 100명당 기준 유선초고속인터넷가입자 수 - 9.78
 - 인구 100명당 기준 무선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 42.27으로100명당 인터넷이용자수는 약 53명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원하는 쾌적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요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약 10명 수준임
- 특히, 2013년 휴대폰가입자가 2,967.5만 명으로 2009년 이후 연평균 11.2% 증가하고 있어, 휴대폰 모바일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됨
-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약 42% 수준이나 전체 가입자 중 Feature폰 사용자가 80%에 달해, 최근의 스마트한 모바일 전자거래는 한계가 있음
- 이를 반영하여 한국과는 달리, Feature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음

■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이용자 현황

- 카자흐스탄 통계청의 최근 5년간(2009~2013년) 인터넷 가입자 통계를 보면 인터넷 가입자는 2009년 60만 명에서 2013년 197.6만 명으로 연평균 26.9%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주(州)별 인터넷 가입자를 보면, 금융수도인 알마티시(市) 34.7%, 카라간딘주(州) 8.3%, 행정수도인 아스타나시(市) 6.3% 등 주로 대도시에 많이 몰려 있음
- 또한, 인터넷 가입자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인터넷 가입자 중에서 5%인 80.4만 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고, 2009년 4.4% → 2010년 4.2% → 2012년 5%로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오병철 교수님이 한국의 전자상거래 규모에 대해 말씀 주셨지만,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약 4.5~6억 달러로 총 소매유통의 2%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음

2.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현황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는 주로 항공, 철도 등 티켓 구매 비중이 높고, 앞서 Dr. Miras Daulenov가 말씀 주셨던 초코라이프미(Chocolife.me), 블리자드(Blizzard) 등 소셜커머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항공, 철도, 호텔 등 티켓/쿠폰 서비스 분야 전자상거래 비율이 44%를 차지. 기존 오프라인의 대형 마켓이 인터넷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Magnum, Aport Mall, TechnoDOM 등이 있음
- 전자상거래 이용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젊은 20~30대가 많고, 모바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어, 미국의 Gurupone과 같이 초코라이프미(Chocolife.me), 블리자드(Blizzard)와 같은 Social Commerce가 크게 성장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미국의 e-Bay 사이트를 통한 직접 거래가 늘고 있으며,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기업인 Taobao가 카자흐스탄에서 iZobility라는 Brand로 러시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에서 가능한 결제수단으로는 카드결제, 키오스크(Kiosk), 현금, e-Money 등이 주로 이용됨
- 국민 중 상당수는 Credit Card가 아닌 Debit Card를 사용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카드 결제 비율은 한계가 있고,
- 많은 부분 키오스크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의 장점인 편의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요소임

- 전자상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결제의 편리함이 매우 중요한데, 카자흐스탄에는 Dr. Miras Daulenov가 언급한 MyPay의 활동이 기대됨
- 현재는 주로 인터넷 이용료, Cable TV, Tax, 물/가스/전기 등 유틸리티 비용 결제에 한정되어 이용되고 있고 인터넷쇼핑몰 전반에 널리 이용되지는 않고 있음

3.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전망

최근의 카자흐스탄정부의 모바일 전자정부 및 모바일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살펴 볼 때, 향후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대됨

- 특히, 카자흐스탄의 ICT 인프라와 광활한 지역 특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Trend를 바탕으로 볼 때 모바일 커머스의 성장이 기대됨
- 가트너에 따르면, 전세계 모바일 상거래 이용자는 2014년 2억 4,500만 명에서 2017년 4억 5천만 명으로 83% 성장을 예측. 모바일결제액도 206% 성장한 7,2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2014년 한국 대외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2015년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는 2013년에 비해 5~7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5년 말까지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36억 달러로 총 소매유통 약 900억 달러의 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를 원활하게 할 물류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의 질이 확대되고 있어 전자상거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정부의 로드맵-2020으로 도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로 남북 및 동서의 도로망이 확대되고 있고, 항공, 철도 서비스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물류 및 우편 서비스 현대화 가속과 정보시스템 도입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4.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 기회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저비용 고품질의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간편하지만 완벽한 보안이 보장된 전자결제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함
- 특히, 카자흐스탄은 전자결제 편의성에 약간의 장애 요소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Paypal 이나 최근 중국의 Alipay 등과 같이 전문적인 인터넷결제서비스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및 금융거래 관련 법률 및 제도가 마련된다면 전자 상거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

-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와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약 철회 및 분쟁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편안하고 안심하게 거래 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개선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따른 실물의 운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이용자가 마음 편히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운송 및 Door-to-Door 서비스에 대한 각종 독점 및 규제 해소 등 법률의 보완이 필요함
- Door-to-Door 서비스 대도시에 한정되거나 외부의 경우 그 비용이 비싸고, 많은 경우 우체국 사서함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이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소포(Parcel)을 Pickup해야 하므로, 전자상거래의 편의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음
- 배송 시 파손, 분실 발생 시 실질적 보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임
- 마지막으로, 택배물의 배달 시 고객이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지불할 수 있는 COD(Collect on Delivery) 서비스와, 현재는 Kazkom 등에서 기업 고객에 한해 제공하고 있는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기업과 개인이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적/제도적 환경 마련을 통해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시장에 서비스 한다면,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더욱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됨

토론 4

Zhanna Abdilmanova 수석전문관(카자흐스탄 법무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1.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및 관련 법률의 실태

카자흐스탄에서는 전자상거래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는데, 지난 수년간 전자상거래가 집약적으로 발전하여 이 분야 입법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지금은 전자상거래가 입법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Miras Daulenov 박사가 발제를 통해 언급했듯이 카자흐스탄 상거래 규제분야에 속하는 입법은 법률과 규정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아래 내용의 발제를 추가하고자 한다.

현재 입법화되어 있는 상거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규정은 모든 법률 중에서 핵심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거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상거래에 할애된 조항은 단 1개에 불과하다. 동 조항은 전자상거래를 역내 통상의 별도 유형으로 언급하였으나 이러한 유형의 특성은 검토되지 않았다.

한편 행정 위반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위법이 발생할 경우 부과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위반에 관한 법률은 정보자료 접근권의 위법한 제한(제84조)과 정보자료 보호수단 악용에 관한 의무 위반(제497-1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 위반(제497-2조), 정보화에 관한 법률 위반(제497-3조)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 책임을 5~200개월로 환산되는 벌금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벌금은 이보다 훨씬 높다.

한편 제497-2조와 제497-3조는 전자 문서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증기관에서 부여하는 책임, 그리고, 재산 및 심리적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개인과 법인에 관한 기밀 자료와 법적 권리 및 자유에 대하여 침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및 신설 형법(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은 정보화 및 전기통신 서비스 분야에 별도로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정보 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에 있는 정보에 대한 위법한 접근(제205조), 정보의 불법 파기나 수정(제206조), 불법 정보 추출(제208조), 데이터 전송에 대한 방해(제209조), 접근이 제한된 전자정보 자료의 불법 확산(제211조).

따라서 시민과 법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위법한 접근, 사용은 벌금과 자유의 제한, 구속의 형태로 형사적 책임을 수반한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는 국제법의 규제 대상이기도 하다.

요컨대 전자상거래는 이미 입법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시정이 필요한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2.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규범적 법률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2010년 5월 4일자 법률이 주축을 이룬다.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에 소비자 및 판매자의 권리,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공공 단체의 기능이 언급되고 있지만, 소비자 권리 침해를 시정하는 명확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에 따라 소비자 권리 보호 분야의 당국은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신설법률 초안을 입안하고 있다. 해당 초안은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소비자 권리보호의 순서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아울러 신설법률 초안에서는 소비자 권리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기구의 권한이 상세히 서술된다. 현행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자격 및 이들의 보호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신설 법률은 이 같은 착오를 시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발제문에 기재되듯이 물품이 배송되기 이전과 배송 이후 14일 안에 언제든지 물품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와 관련된 제안도 법률 초안에 명기된다(제49조).

3.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선 방안 (전자상거래에 대한 제도적 지원강화)

신설된 법률 초안은 금년도에 의회에 상정되었다. 초안은 상거래활동 규제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법에 대한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법률 초안)

법률 초안은 “전자상거래”나 “전자상거래 참여자”, “전자상거래 중개인”과 같은 용어를 도입하고 정보 제공과 같은 판매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관세동맹 협정과 상거래활동 규제에 관한 법률의 통합이 전체 개정안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더욱이 애초 제안된 개정안은 법률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관련 업계에서는 아래의 두 가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 전자 상거래 기업에 대한 과세 영향의 균등화

미국과 같이 여러 국가에 세금 감면이 시행되고 있다. 세금 감면은 전자상거래의 양적 성장, 기타 인접국과의 경쟁력 향상 등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정부는 카자흐스탄의 부가가치세율이 크게 낮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

• 전자 송장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기관에 대한 전자송장은 회계적 필요로 인해 도입되었는데 업무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 인터넷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를 판매한 후에는 실제 서명이 날인되는 송장뿐 아니라 기타 관련 문서가 필요하다.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서

제 3 장

ALES 개최 성과 및 향후 계획

2014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I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ALES)의 성과

1.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의 내실화

- 작년 제1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에 이어 올해 제2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아시아 공통 법제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교류의 장 마련
- 연사 참가국 이외의 국가도 초청하여 각국의 관련 회의주제에 관한 관심 환기 및 법제교류 수요 발굴

2. 교류국의 법제수요를 반영한 교류협력

- 제1회 회의의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 협력방안 논의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유라시아 국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법제수요를 반영한 관심 법제분야 선정 및 관계전문가가 참여한 심도 있는 논의
- 법제도를 관장하는 국내외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연구기관, 실무전문가 및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등 국내외 민·관의 공동 참여 유도

3. 법제한류의 실질적 성과 창출 유도

- 이번 회의를 통해 IT 수출 관련 소관 부처 및 민간 기업을 외국 법제기관과 연결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법제 교류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 마련

II 향후 계획

1. 회의를 바탕으로 한 성과 창출 노력 지속

- 이번 회의에서 형성된 국내외 정부기관,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 네트워크의 지속적 관리
-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법제분야 교류협력 수요 발굴 및 대상국의 법제도 수요에 맞는 경제적 성과창출을 위한 지속적 노력 경주
- 주요 참여기관과 핫라인 개설 및 교류협력 분야 심화
- 대내외적으로 회의 성과의 지속적인 홍보

2. 향후 회의 개최 방향

■ 회의 의제 선정

- 법제수요 분석
 - 주요 교류국가 정부기관, 아시아법제 관련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해외교류가 많은 행정기관, 로펌 등을 대상으로 아시아 각국의 법제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활용
 - 동남아시아, 유라시아, 중동 등을 대상으로 법제수요의 주기적 파악 및 교류계획에 반영
- 아시아 공통이슈 선정
 - 법제수요 분석결과와 우리와의 협력기반 마련 국가 등을 기반으로 아시아 공통 관심분야를 반영한 회의 의제 선정

■ 회의 운영 체계

○ 국내외 법제기관 협력네트워크 긴밀화

- 대법원, 법무부 등 행정기관, KOICA, KDI 등 연구기관과 법제교류분야 공유 및 회의 개최 협조관계 유지

○ 민관 공동협력체계 확대 발전

- 이번 회의는 민관 공동협력체계(전문기업-국내외 정부기관-국책연구기관 등)를 통해 성과를 달성하였는바, 향후에도 민간 전문가그룹의 참여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 필요
- 회의성과를 기반으로 민관 공동협력체계의 확대

■ 회의 성과의 공유 강화

○ 회의 성과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아시아 법제기관 및 국내 주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회의성과 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 세부협력을 위한 후속조치 강화

- 특히 아시아 법제기관 대상으로 세부 법제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등 추진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서

별첨

보도자료

2014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1. 사전 보도자료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법제처	보도자료	www.moleg.go.kr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법제교류협력팀	2014. 10. 28.(화)/ 총 4장
담당자	팀장 문민혜 사무관 이유진 (02)2100-2714	

대한민국의 법제경험, 유라시아와 나누다!

-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둘라트 바키셰프(Dulat Bakishev)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바흐티요르 이브라기모프(Bakhtier N. Ibragimov)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리 대사를 비롯하여 주요 법제교류 관련 전문가와 국내외 연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법제처는 그간 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 교류를 통하여 서로 법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한국과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전문가가 함께 IT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제1세션은 우즈베키스탄과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를 주제로, 제2세션은 카자흐스탄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법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 각 세션에는 법제처, 안전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우리나라 실무자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제 실무자가 함께 참석하여 양국의 법제경험 및 법제발전 방향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법제처는 외국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의 60~70년대 고도성장기 법제가 정리된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법제’ 책자를 함께 배포하여, 우리의 경제발전 법제 및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한류(法制韓流)’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라시아 국가 간 법제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민국의 법제경험을 더 많은 아시아 국가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 사후 보도자료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법제처		보도자료		www.moleg.go.kr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법제교류협력팀		배포일시	2014. 10. 30.(목)/ 총 10장(붙임 포함)
담당자		팀장 문민혜 사무관 이유진 (02)2100-2714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개최

- 디지털 실�크로드 시대의 IT법제 발전방안 논의 -

-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가 29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회의에는 카자흐스탄 법무부, 카자흐스탄 인문·법률 대학,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입법조사연구소, 우즈베키스탄 ICT 위원회 등 유라시아 주요 법제 관련 기관 전문가와 국내외 연구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 또한, 주한 캄보디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및 동티모르 대리 대사 등 주요 외교사절도 참석하여 법제교류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열띤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회의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법제에 대한 건설적인 발전방향이 도출되고,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가 앞으로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를 위한 새로운 실크로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조연설을 맡은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김경섭 부원장 대독)과 이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안세)는 유라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어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논의가 이루어졌다.
- 제1세션에서는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를 주제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제2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관련 소비자 법제’를 주제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 각 세션에는 법제처, 안전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유라시아 진출 IT 기업,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법제 기관과 연구 기관 등 다양한 관련 기관에서 실무자가 참석하여 개별 법제 발전 및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한편, 법제처는 오늘 회의에서 60~70년대 고도성장기 법제가 정리된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법제’ 책자를 함께 배포하여, 우리의 경제발전 법제 및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공유하였다.

- 이번 회의는 올해 6월 중앙아시아 3개국 정상 순방을 계기로 체결된 카자흐스탄 법무부와 의 법제교류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물로서,
- 법제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 네트워크 확대와 대한민국 법제경험 공유를 통한 ‘법제한류(法制韓流)’ 전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주요 언론 보도내용

가. 방송사 보도

• KBS 7시 뉴스(10. 29.)



법제처는 오늘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를 열고 한국과 유라시아 IT법제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정부 법제처장과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바키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이브라 기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리 대사를 비롯해 법제교류 관련 국내외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전자정부 구축과 전자 상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K-TV 뉴스(10. 29.)

과거 동서교역의 통로였던 실크로드처럼 선진화된 법제도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제교류의 실크로드가 마련됐습니다.

각국 법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최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진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IT최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대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관련 법제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IT법제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아시아 지역 법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IT법제에 대한 공유의 장이 열렸습니다.



“그간 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경제발전 법제 및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은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따라 다각적인 변화를 추구해왔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유엔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처음으로 국가 행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전자정부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우즈베키스탄도 우리의 법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바탕으로 일상 깊숙이 자리한 전자상거래.

이 분야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법이나 전자서명법 등의 법제에서도 우리나라는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과거 사회주의 공화국일 당시 만들어진 법제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우리의 법제 경험 등을 토대로 제도 개정에 나서야할 상황입니다.

• K-TV 뉴스(10. 30.)

KTV 생방송 국민행복시대입니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이은 후속조치가 각 분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원 외교국이었던 중앙아시아와의 정보통신기술 교류도 그중 하나인데요, 어제 열렸던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에서 주요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경험을 아시아와 나누고,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ALES)’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한국과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전문가가 함께 IT법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 지면 보도

• 서울경제(10. 28.)

hankook1.com

서울경제



29일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제정부 법제처장은 29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 정보기술(IT) 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유라시아의 법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전자정부 등 유라시아 법제의 관심 협력 분야를 논의하고 법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력시간 : 2014-10-27 20:44:59



• 기호일보(10. 29.)

오늘 아시아 법제발전 모색 전문가회의

2014년 10월 29일 (수) **지면보기** | 6면

조별국 기자 ☞ chobk@khihoilbo.co.kr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법제 경험을 유라시아 국가들과 함께 나누는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를 29일 개최한다.

이번 국제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관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다.

현장에는 제정부 법제처장과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및 돌라트 바키세프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바흐티요르 이브라기모프 주한우즈베키스탄 대리 대사 등 주요 내·외빈을 비롯해 150여 명의 국제 법제교류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총 2개 세션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법제전문가가 함께 IT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회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우즈베키스탄과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를 주제로, 제2세션은 카자흐스탄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법제’를 주제로 열린다.

각 세션에는 법제처, 안전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우리나라 실무자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제 실무자가 함께 참석해 양국의 법제 경험 및 법제 발전 방향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제처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국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의 1960~70년대 고도성장기 법제가 정리된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법제」 책자를 나눠 주고 우리의 경제발전 법제 및 경험을 공유한 ‘법제한류(法制韓流)’ 확산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라시아 국가 간 법제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을 더 많은 아시아 국가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의 법제 이해를 넓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제1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다. 인터넷 매체 보도

• 뉴시스(10. 28.)

공감언론
뉴시스 **NEWSis** ()

🖨 인쇄하기 📧 달가

법제처,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 29일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4-10-28 14:23:05]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오는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공동으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돌라트 바키셰프(Dulat Bakishev)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바흐티요르 이브라기모프(Bakhtier N. Ibragimov)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리대사를 비롯해 법제교류 관련 국내외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주제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전문가들이 IT(인터넷기술)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도 한다.

법제처는 또 외국인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의 1960~1970년대 고도성장기 법제가 정리된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법제' 책자를 배포해 경제발전 시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라시아 국가 간 법제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민국의 법제경험을 더 많은 아시아 국가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데일리(10. 28.)

법제처, 내일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개최

입력시간 | 2014.10.28 11:21 | 김진우 기자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29일 오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과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을 비롯해 돌라트 바키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바흐티요르 이브라기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리 대사 등 법제교류 관련 전문가와 국내외 연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정보기술(IT) 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를 주제로 △카자흐스탄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법제'를 주제로 각각 세션이 열린다.

각 세션에는 법제처·안전행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우리측 실무자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제 실무자가 참석, 양국의 법제경험과 법제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제 처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라시아 국가 간 법제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민국의 법제경험을 더 많은 아시아 국가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